안전보건 나침반
개정판 2026

일터에서 알아야 할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 교육 기본서

서비스업



https://portal.kosha.or.kr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나침반
개정판 2026

일터에서 알아야 할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 교육 기본서

서비스업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26 안전보건 교육 기본서」 활용 가이드



사업장별 '교육 기본서' 활용법



제1·2장 사업장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세요.



제3장 예방대책 공유로 재해를 예방하는 시간



제4장 사례 중심 교육으로 안전의식 UP!



제5장 교육 후 공단지원까지 기본서에서 바로 찾으세요.



"기본서와 함께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

더 많은 안전보건 자료가 필요하다면? 산업안전포털 > 산재예방 정보 > 안전보건 자료실

contents

PART 1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01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왜 필요한가? **007**
02 서비스업 현황 **008**
03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009**
04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011**
05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012**
06 안전보건교육 **015**
07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019**
08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 지급·착용 **023**
09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024**
10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교육 **026**
11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 **029**
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033**
13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 진행 절차 **034**
1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035**
15 휴게시설 설치의무 **038**

PART 2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0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041**
0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046**
03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 **047**

PART 3

서비스업 산업재해 예방 기술자료

01 서비스업 안전관리 **049**
02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051**
0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055**
04 음식 및 숙박업 **059**
0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63**
0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포함) **066**
07 교육서비스업 **072**
08 뇌·심혈관질환 예방 **075**
09 스트레스 관리 **076**
10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078**

PART 4

서비스업 사망재해 예방대책

01 서비스업 사망재해 유형
- ① 교통사고 **081**
- ② 떨어짐 **082**
- ③ 넘어짐 **083**
- ④ 끼임 **084**
- ⑤ 부딪힘 **085**

02 재해 사례
- ① 계단 이동 중 넘어져 사망 **086**
- ② 이동식 사다리 사용 작업 중 떨어져 사망 **087**

PART 5

주요 지원사업

01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089**
02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092**
03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094**
04 소규모 서비스업 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사업 **095**
05 안전보건교육 지원 제도 **096**
06 안전체험교육 **098**
07 위험성평가 인정 **100**
08 소규모 사업장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103**
09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105**
10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운영 **106**
11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108**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축지원 **110**
13 건강일터 조성지원 **114**

PART 6

재해예방 유관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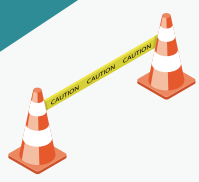
01 안전보건공단 **117**
02 고용노동부 **118**
03 근로복지공단 **119**

PART

1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01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왜 필요한가? **007**
02 서비스업 현황 **008**
03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009**
04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011**
05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012**
06 안전보건교육 **015**
07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019**
08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 지급·착용 **023**
09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024**
10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교육 **026**
11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 **029**
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033**
13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 진행 절차 **034**
1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035**
15 휴게시설 설치의무 **038**



01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왜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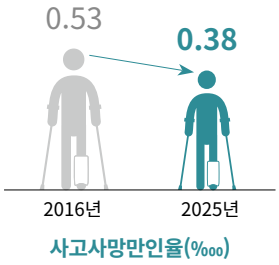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 그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기업과 국가에는 인력손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막대한 경제손실을 안겨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며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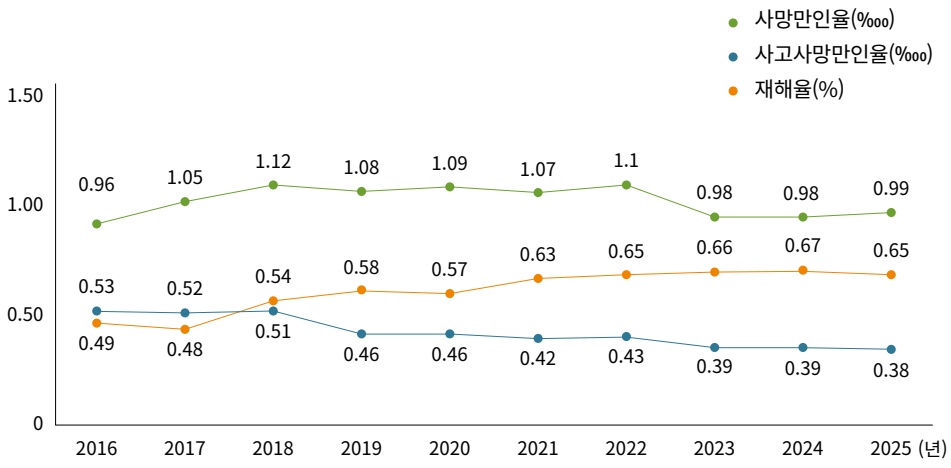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발생현황

전체 산업에서 사망자 2,248명, 재해자 147,130명이 발생했습니다(2025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으로서 1개 법률, 1개 시행령, 3개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규칙

02

서비스업 현황

「서비스업」은 산재보험 사업분류상 제조업, 건설업, 광업, 농·임·어업을 제외한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등 기타 사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을 통칭하는 개념이나,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 재해 발생빈도·유형, 근로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포괄하고 있는 「기타의 사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을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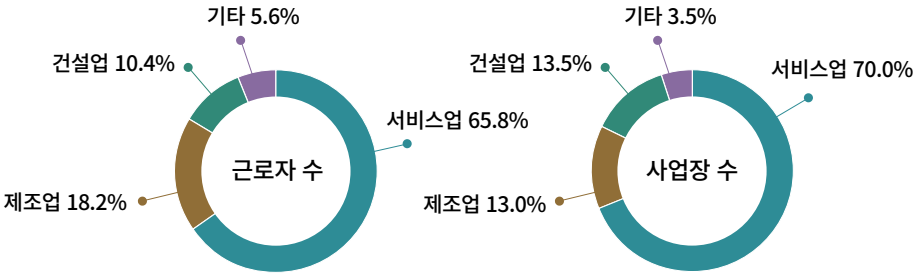
업종현황

25년

구분	근로자 수	사업장 수
서비스업	65.8%	70.0%
제조업	18.2%	13.0%
건설업	10.4%	13.5%
기타	5.6%	3.5%

업종 외형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지속적 확대가 예상됩니다.

- ’25년 서비스업 사업장 수(224만개소)는 전 업종 사업장의 70.0%를 점유, 향후에도 지속적인 규모 증가가 예측됩니다.〈산재보험 가입기준〉
- ’25년도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1,48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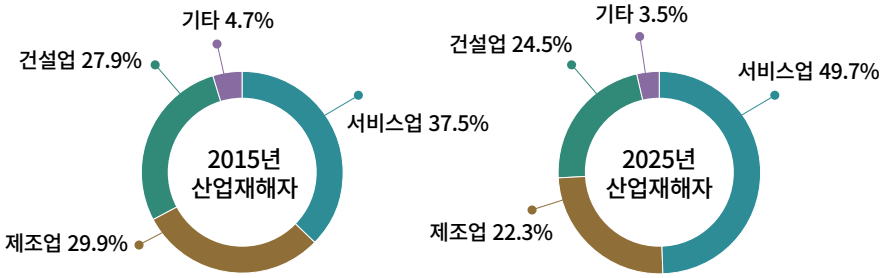


산업재해 동향

산업재해 중 서비스업 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점점 증가했습니다.

- ’15년 대비 ’25년 서비스업 재해자는 약 2배가 증가하고, 전체 재해자의 4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재해자 수(’25년) : 전체 147,130명, 서비스 73,202명, 제조 32,847명, 건설 36,059명, 기타 5,022명



서비스업 재해자 중 7대 소분류 업종의 재해자가 64.9%(47,575명)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7개 업종: ① 음식 및 숙박업, ②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③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④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⑥ 교육서비스업, ⑦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03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주 책임하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고 조직 내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6조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재해 기록·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유해·위험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합니다.
-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지불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었는지, 작업 시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안전한 방호조치 등을 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 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의무사항

-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산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 검색창에 '산업안전보건법' 입력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현행법령 → 검색창에 '산업안전보건법' 입력
-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산재예방 정보 → 법령/규정 → 안전보건법령

04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용어 정의

구분	내용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작업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이송**: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 **보고 및 현장보존**: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보존

보고사항

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사항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산업재해 기록·보존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05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3년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64조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합니다.



사실의 확인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한다.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한다.



재해요인의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찾는다.



재해요인의 결정

-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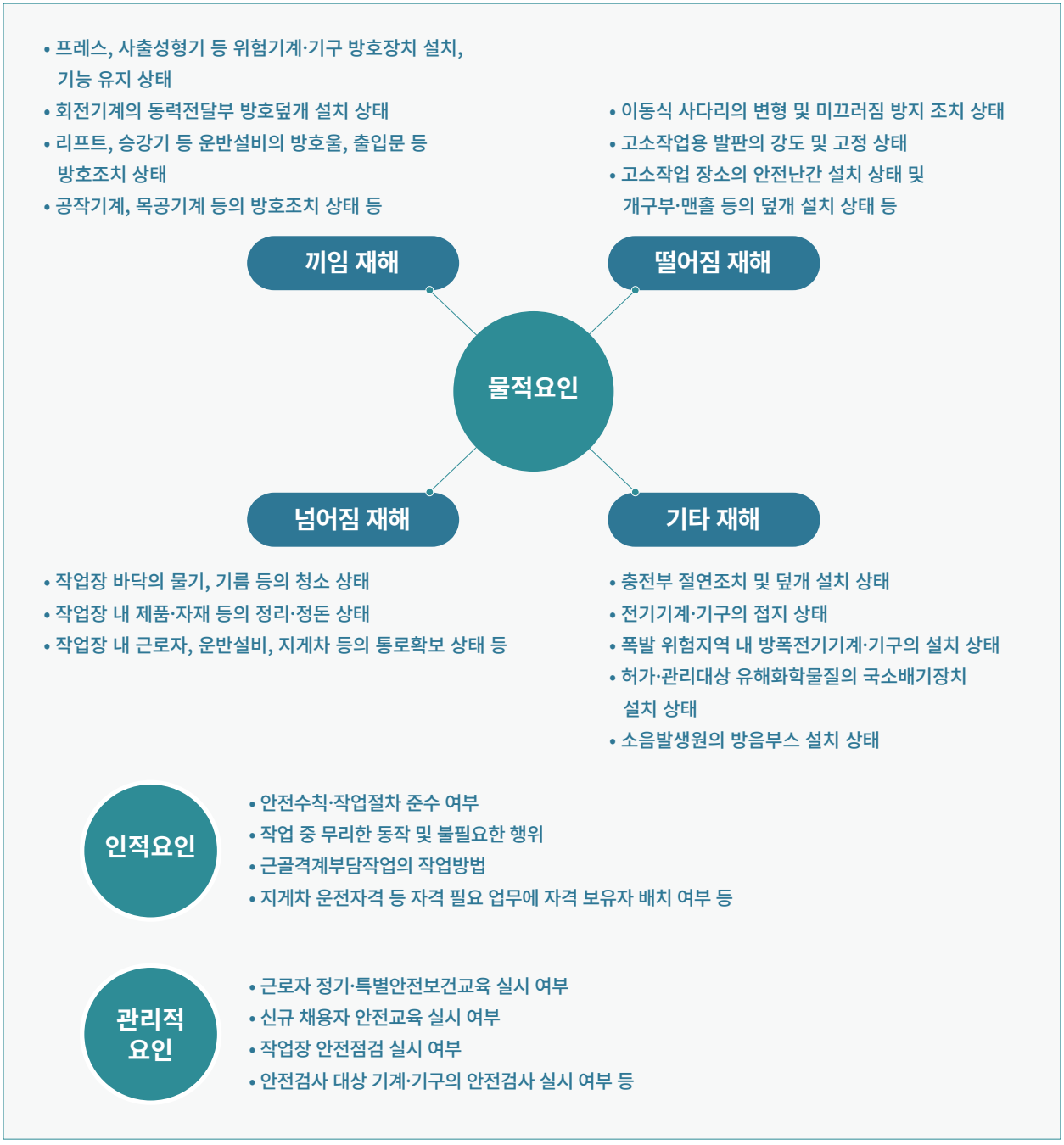


계획(대책)의 수립

-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재해요인 도출 예시

재해요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위주로 도출합니다.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

- 재해요인으로 도출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
- 수립된 내용을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전체적으로 공유

재발방지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 방법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산재예방 정보 → 재해사례 → 사고사례

재해 재발방지계획서(작성 예시)

재해 재발방지계획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주)	재해일시	○○.○○.	재해자	○○○

재해발생 개요

피재자는 20○○.○○.○○ 11시 5분경 생산2실에서 오전 작업(돈육제품 절단 및 분쇄)을 마치고, 오후에 진행할 다른 종류의 육제품을 절단 및 분쇄하는 식료품가공기계(믹서기)의 청소 작업(내부 세척 및 스크루에 묻어 있던 분쇄육 제거)을 하던 중 면장갑을 착용한 왼손이 스크루에 말려들어 가 절단됨





육류를 절단 및 분쇄하는 믹서기 | 믹서기 연동장치





믹서기 내부 및 재해발생 지점 등

※ 왼손이 스크루에 말려들어 가는 것을 인지한 피재자는 믹서기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시켜 스크루의 회전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119 구조를 기다렸음

재해발생 원인

- 식료품 가공기계인 믹서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으로 안전장치(비상정지장치 및 덮개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
- 믹서기의 스크루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끼임 위험이 있는 스크루의 표면에 묻어 있던 절단된 육류 제거 작업 실시
- 안전장치(덮개 연동장치) 작동상태 미확인 및 덮개 연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음을 사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

재해방지 대책

- 믹서기 방호덮개 연동장치 동작 정상화
  - 믹서기 가동 중 손 등 신체의 일부가 절단날에 베이거나 회전하는 스크루에 감길 위험이 없도록 방호덮개 개방 시 즉시 전원이 차단되어 가동이 중단되는 전기적 연동장치(인터록)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청소 및 정비 등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 끼임 위험이 있는 믹서기 스크루의 청소, 수리 및 점검(정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기계 운전을 정지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
-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 정상작업뿐만 아니라 정비, 청소 및 보수 작업 시 적절하지 않은 작업방법으로 인한 끼임, 부딪힘 등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교육 등 실시 및 작업 시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조치

---

1. 재해발생 개요는 재해발생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2.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은 상호대응이 되도록 작성
3. 재발방지 대책은 사업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단기적 대책,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개선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적 대책으로 제시

06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

근로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과정	교육시간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주요 특별교육 대상 작업

-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1톤 이상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
- 전압 75V 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는 2m 이상 구축물 파쇄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굴착,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해체작업,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 비계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 5m 이상 건축물 골조, 다리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부재 조립·해체·변경 작업
-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취급 작업, 석면 해체·제거 작업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등 39가지 작업

※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교육 일부 면제조건

- 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
- 관리감독자 교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면제

※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시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 검색창에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입력 후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참조

사업주 자체 교육 시 강사 자격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

※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참조

교육자료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산재예방 정보 → 안전보건 자료실 → 해당하는 자료를 내려받아 교육 시 활용

공단 강사 지원 신청

산업안전포털교육시스템 (https://edu.kosha.or.kr)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일선기관 문의



※ 본 서식은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통합검색 → 검색창에 '안전보건 교육일지' 입력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위험성평가) 관련 활용 서식 및 안내서 등 자료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일지(예시)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재	교육담당	검토	대표이사

작성일자: 20 년 월 일(: ~ :) 작성자:

교육의 구분	가. 정기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마. 기타 ( ) 교육 ※ 안전보건교육 및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명	직명	교육실시 장소	비 고	
특이사항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성명	서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별첨: 교육 교안 및 교육실시 사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 단기간·간헐적 작업: 1시간 이상 -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공통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개별내용 참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건설기계(27종)*,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인(전업),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운송 관련)

※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참조

건설기계 27종*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07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 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및 설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분류	(일람표 번호) 종류	용도 및 설치·부착장소	예시
금지 표지	(101)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해야 할 장소	조립·해체 작업장 입구
	(102) 보행금지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중장비 운전 작업장
	(103) 차량통행금지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집단보행 장소
	(104)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을 금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	고장난 기계
	(105) 탑승금지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고장난 엘리베이터
	(106)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인화물질 취급장소
	(107) 화기금지	화재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취급을 금하는 장소	화학물질 취급장소
	(108) 물체이동금지	정리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절전스위치 옆
경고 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저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장소	휘발유 저장탱크
	(202) 산화성물질 경고	가열, 압축 및 강산·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질산 저장탱크
	(203) 폭발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물 저장실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이 있는 장소	농약 제조·보관소
	(205) 부식성물질 경고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황산 저장소
	(206) 방사성물질 경고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207) 고압전기 경고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감전우려지역 입구
	(208) 매달린물체 경고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209) 낙하물체 경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비계 설치 장소 입구
	(210) 고온 경고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주물작업장 입구
	(211) 저온 경고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냉동작업장 입구
	(212) 몸균형상실 경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경사진 통로 입구
	(213) 레이저광선 경고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레이저실험실 입구

분류	(일람표 번호) 종류	용도 및 설치·부착장소	예시
경고 표지	(2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납 분진 발생 장소
	(215) 위험장소 경고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	맨홀 앞 고열금속찌꺼기 폐기장소
지시 표지	(301) 보안경 착용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302) 방독마스크 착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303) 방진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분진이 많은 곳
	(304) 보안면 착용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용접실 입구
	(305) 안전모 착용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갱도 입구
	(306) 귀마개 착용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판금작업장 입구
	(307) 안전화 착용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채탄작업장 입구
	(308) 안전장갑 착용	안전장갑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고온 및 저온물 취급 작업장 입구
	(309) 안전복 착용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단조작업장 입구
안내 표지	(401) 녹십자표지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402) 응급구호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403) 들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404)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세안장치 설치장소 앞
	(405) 비상용기구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앞
	(406) 비상구	비상출입구	비상출입구 앞
	(407) 좌측비상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좌측 비상구가 있는 장소
	(408) 우측비상구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우측 비상구가 있는 장소
출입 금지 표지	(501) 허가 대상 유해물질 취급	허가 대상 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출입구(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502) 석면취급 및 해체·제거	석면제조, 사용, 해체·제거 작업장	
	(503) 금지유해물질 취급	금지유해물질 제조·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안전보건표지의 설치기준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부착하여야 합니다.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 또는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제작·설치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부착된 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표지 내용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로 교체하여 설치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설치·부착하여야 합니다.
-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4 안내표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관계자외 출입금지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외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6 문자추가 시 예시문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는 표지는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08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 지급·착용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6조

각종 보호구 사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승차용 안전모



보안면



방독마스크

서비스 업종의 보호구 (예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인증하는 제품이 아닌 순수한 서비스업종 재해예방을 위한 보호구입니다.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철망 장갑



베임방지 장갑



미끄럼방지 장화

09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1조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대상

종류	대상
일반건강진단	전체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건강장해 의심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 근로자
임시건강진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명령을 받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건강진단 절차

대상근로자 선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 의뢰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사후관리	서류보존
일반검진: 생산직·사무직 근로자 **특수검진**: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진단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보	유소견자 작업전환 및 관리 등	5년간 보존. 단, 발암물질 취급 근로자 검진결과는 30년간 보존

건강진단 종류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 화학물질, 분진, 소음,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사무직 근로자**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 참조

**** 특수건강진단기관 검색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검색창에 '특수건강진단기관'
입력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등 유기화합물 109종
-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 불소, 산화에틸렌 등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 염화비닐, 비소 등 허가대상유해물질 12종
-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석면분진 등 분진 7종
- 소음 등 물리적 인자 8종
- 구리, 납, 수은 등 금속류 20종
- 금속가공유 1종
- 야간작업 2종

※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상이하므로, 사업장 소재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문의 후 아래 기준에 맞춰 진단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등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의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비용지원 (공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금액

지원대상 유형 및 규모(근로자 수, 공사금액)를 구분하여 지원
※ 배치전건강진단 비용 포함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 일용직 근로자,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 석면 등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공단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사업신청·조회 → 건강지원 신청 →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 신청하기

10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설명서입니다. 사업주는 MSDS 정보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미리 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습니다.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며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6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 물질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대상 화학물질은 제외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항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0조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⑥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정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규제 현황 ⑯ 그 밖의 참고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조치사항

조치사항	의무주체	주요 내용
MSDS 작성·제출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제조·수입자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MSDS 제공	양도·제공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 합니다(연구개발용 MSDS는 예외).
MSDS 게시·비치	취급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MSDS를 취급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경고표시	양도·제공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예: 파이프라인, 탱크로리 등)으로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별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취급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MSDS 관리요령	취급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려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MSDS 교육	취급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용기에도 반드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용기

메틸알코올(메탄올)



위험

유해·위험 문구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 태아 또는 생식 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신체 중 시신경 및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신체 중 시신경 및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예방조치 문구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용기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용기를 폐기하시오

공급자 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명 및 전화번호 등 기재

소량용기

100g 또는 100ml 이하

메틸알코올(메탄올)



위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조하시오

반제품용기

메틸알코올(메탄올)

위험

- 일반용기: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으로 된 것
- 소량용기: 내용량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
- 반제품용기: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 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 경고표지 기재사항: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5개 이상일 경우 4개만 표시 가능
3.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험”만 표시
4. 유해·위험 문구: 해당 문구 모두 기재, 중복되는 문구 생략, 유사한 문구 조합 가능
5. 예방조치 문구: 7개 이상인 경우 예방, 대응, 저장, 폐기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 가능
6. 공급자 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MSDS 참고자료 검색 및 경고표지 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자료 검색 방법

KMS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s://msds.kosha.or.kr) 접속 → 왼쪽 아래 ‘MSDS/GHS’ 버튼 클릭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https://msds.kosha.or.kr/MSDSInfo) 접속 → CAS No. 등으로 검색





경고표지 작성 방법

KMS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s://msds.kosha.or.kr) 접속 → 경고표지 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예시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명	Cas No.	KE No.	UN No.	EU No.
메틸 알코올	67-56-1	KE-23193	1230	200-659-6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메틸 알코올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 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 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긴급전화번호 052-703-0000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인화성 액체: 구분2
급성 독성(경구): 구분3
급성 독성(경피): 구분3
급성 독성(흡입: 증기): 구분3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 문구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1: 흡입하면 유독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관련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4 참조

11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의 수립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2024-76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KRAS(위험성평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누가

사업주의 책임하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와 **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언제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평가**, 설비·원재료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산업재해 발생 시 등의 경우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방식으로 시기별 실시

※ 상시평가(매월, 매주, 매일) 활용 가능

어디에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

무엇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화학물질·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빠짐없이 찾기!**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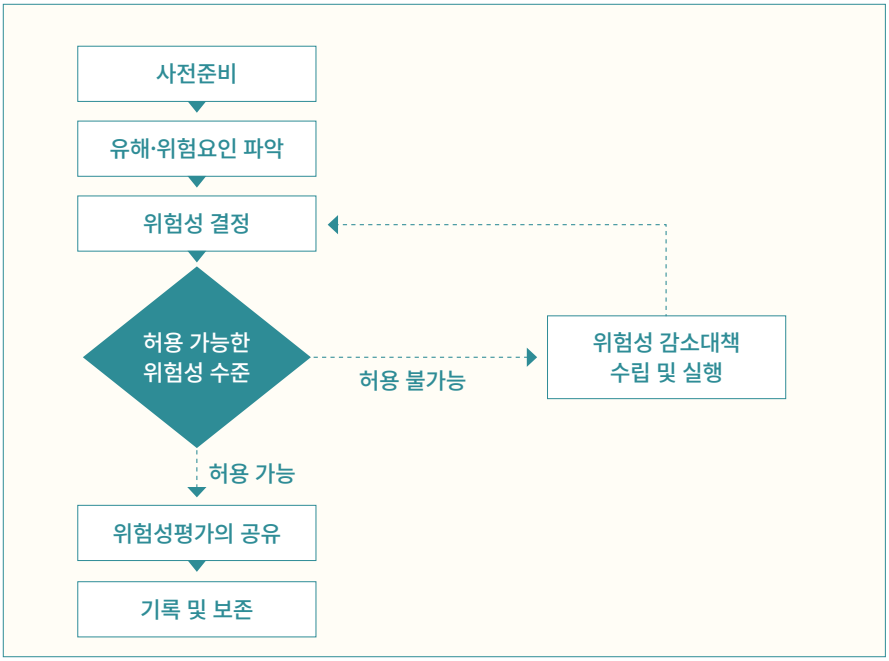
기존에 널리 활용되던 **빈도·강도법**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도 제시!

왜

근로자,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함!



위험성평가 단계별 절차



1단계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결정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 및 결정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5단계

위험성평가 공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

6단계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 및 보존

사업장 위험성평가 KRAS로 쉽고 간편하게 하세요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 무엇인가요?

Korea Risk Assessment System의 약자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평가·개선하는 등 인터넷 기반으로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1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접속하여 사업자 인증(사업장 공동인증서 필요)



2 KRAS(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하기



3 위험성평가 등록 및 실시하기 -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 등 위험성평가 등록



4 위험성평가 완료 - 위험성평가 절차의 모든 단계를 입력 및 저장후 완료하기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의 자세한 사용법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 어떻게 활용하나요?

첫째 위험성평가를 **온라인에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바일 기기**로 근로자가 현장에서 **발굴한 위험요인을 간편하게 등록**하고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과 비교하여 **우리 사업장의 수준을 진단**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양한 자료(실무 지원 영상, 서식 등)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산업안전실-26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사업주 조치사항





-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실시해야 합니다.
  -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 조건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며,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중량물 안내 표지 예시

중량물 취급주의 무게: 5~10kg 무게중심 확인	중량물 취급주의 무게: 10~20kg 무게중심 확인	중량물 취급주의 무게: 20kg 이상 무게중심 확인	중량물 안내표시
경고	주의	위험	중량물 예 / 중량 사진 / ○○ kg 올바른 중량물 취급요령

안내표시 예시

13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 진행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케 하여 서류 확인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수행 후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에게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중지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55조

사업장 감독절차

사법처리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결과,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등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발견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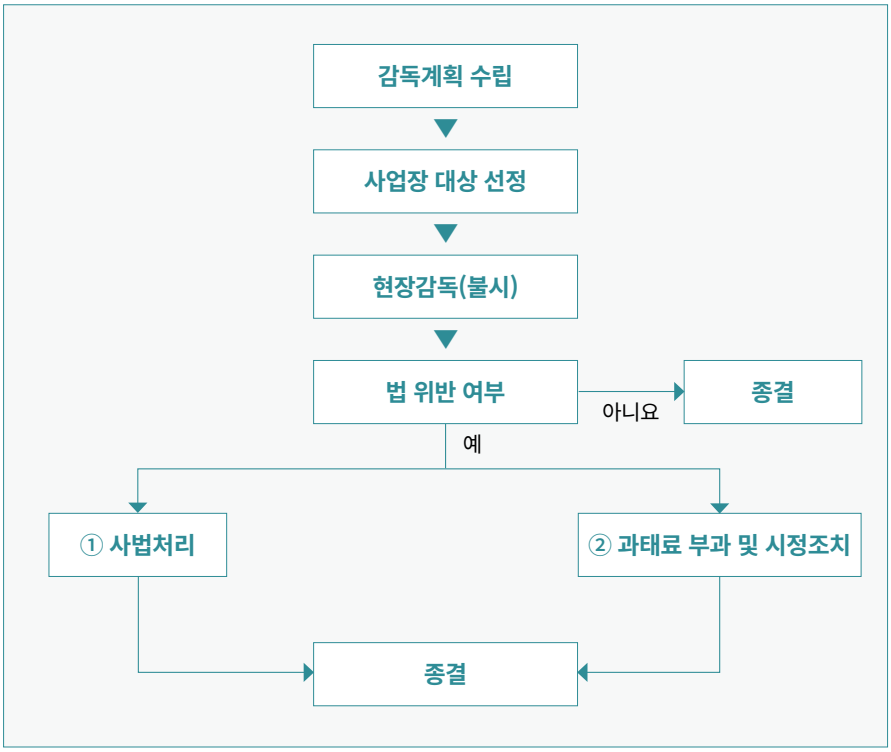
- 사업장 관계자 조사 → 입건(범죄인지보고) → 피의자 신문(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사건을 검찰에 송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결과,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사항 발견 시

-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 과태료 부과 결정 →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 사업주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자 조사 또는 의견진술 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을 제시



1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이 발견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근로자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 위반 발견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부과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만~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기업의 손실은?

- 형벌 또는 과태료
  -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해발생 시
  - 인력 손실, 산재보험료 할증, 민사보상, 생산 차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내용	법조문	세부 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포함)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	500	500	500
		2) 시행령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75조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체를 포함)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법 제29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법 제29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최초로 실시할 때와 실습 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법 제29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2항 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위반 내용	법조문	세부 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법 제175조 제6항 제1호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법 제42조제1항, 제5항, 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300	600	1,000
		나)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1,000	1,000	1,000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두지 않은 경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 상기 기준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음을 유의(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참조)

15

휴게시설 설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으로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아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2. 8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 ① 전화 상담원 ②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③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④ 텔레마케터 ⑤ 배달원 ⑥ 청소 관련 종사자 ⑦ 아파트 경비원 ⑧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설치·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 21의2]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로 한다. 다만, 둘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공동휴게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해 최소 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28°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200l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 특성상 실내에 휴게 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PART

2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0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041**

0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046**

03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 **047**



0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22.1.27. 시행)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법 제2조(정의)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 **유해요인**: 급성중독(약 200여 개의 화학적 인자)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단독·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 열사병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는?

법 제2조(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적용범위는?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24.1.27.부터 적용 범위 확대)

※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 이상)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 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 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조치 이행사항 보관방법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 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상기 조치 등의 이행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수강

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안전보건교육 대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는 미해당)

※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법 제4조 및 제5조)와 관계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만으로도 교육대상이 됨

교육시간

총 20시간 범위에서 이수

교육실시 기관

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수강자)가 부담

교육방법

교육수요에 따라 업종별(건설, 제조, 기타)·규모별(근로자 수 및 도급순위 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이러닝(6시간) 및 집체(6시간) 혼합교육 형태로 구성되며, 토론 및 발표 과정 운영을 통한 참여형 교육 진행

교육내용

- 중대재해 감축 관련 정책
- 「중대재해처벌법」과 경영책임자 의무·역할
-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사례
- 안전문화와 리더십 등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교육 연기요청

교육 통보를 받았지만 해당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 연기 요청 가능(1회에 한함)

→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 통보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4])

위반행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이수확인서

교육완료 후 필요 시 교육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대상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범죄사실이 통보된 사업장

공표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제목
- 해당 사업장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 사항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 공표 전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내용 통지 →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기회 부여(30일 이상 기간)

공표 방법 및 기간

- 방법: 관보,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 기간: 1년(홈페이지로 공표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법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가능

0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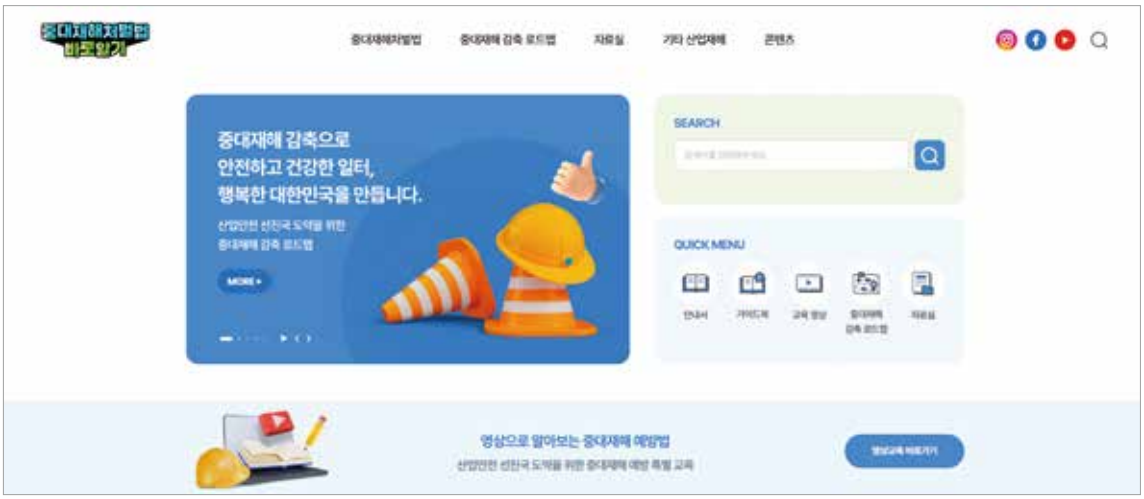
구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보호대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의무내용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④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사업주의 안전조치** ①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②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③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73개 조문)
처벌수준	**자연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자연인**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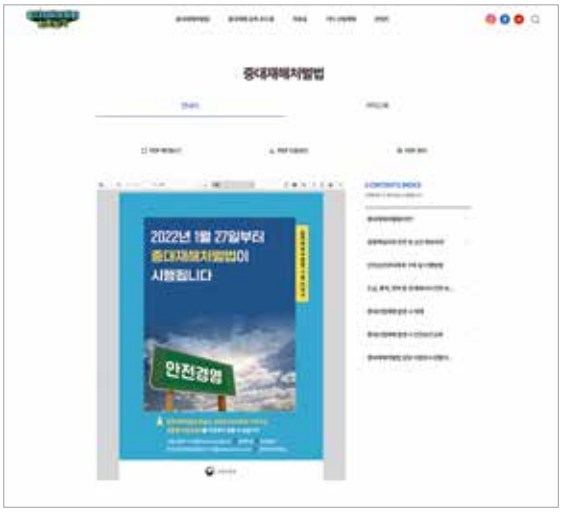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https://koshahub.or.kr)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보도자료,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여 게시한 누리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화면(https://koshahub.or.kr)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및 가이드북





PART

3

서비스업 산업재해 예방 기술자료

01 서비스업 안전관리 **049**
02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051**
0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055**
04 음식 및 숙박업 **059**
0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63**
0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포함) **066**
07 교육서비스업 **072**
08 뇌·심혈관질환 예방 **075**
09 스트레스 관리 **076**
10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078**



01

서비스업 안전관리

최근 산업구조의 주축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재해 발생 비율 및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그중에서는 7개 업종*의 재해자가 서비스업 재해자의 64.9%(202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7개 업종 : ① 음식 및 숙박업, ②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③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④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⑥ 교육서비스업, ⑦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고성 재해 예방 안전·보건 조치 요약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넘어짐 재해 예방 조치

- 바닥에 미끄럼방지용 타일·매트·테이프 시공 등 안전하게 유지(규칙 제3조)
- 계단·바닥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장해물 제거 등 정리정돈 실시(규칙 제3조)
-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답단에는 미끄럼방지 테이프 시공(규칙 제3조, 제30조)
- 바닥의 물기·기름기 등을 즉시 제거하여 청결한 상태 유지(규칙 제4조)
- 미끄럼방지용 안전화·장화 지급 및 착용 지도



미끄럼방지 안전장화



교체 여부 측정방법



20원 기법

떨어짐 재해 예방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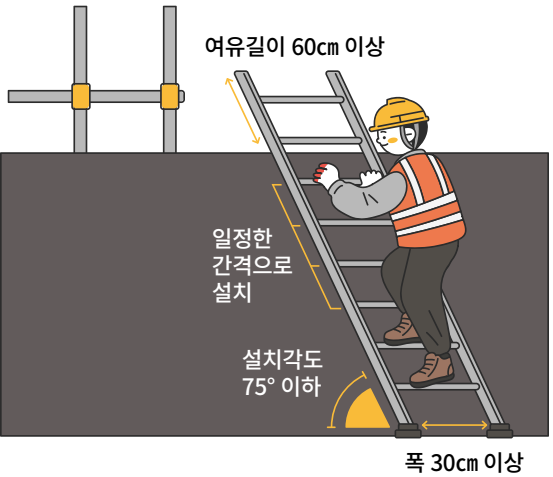
- 떨어짐 등의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설치(규칙 제13조)
-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유지(규칙 제22조)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사용(규칙 제24조)
-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떨어짐 위험장소에 안전난간·덮개 등 설치(규칙 제43조)
- 안전난간·덮개가 충분한 강도 유지토록 관리(규칙 제43조)



사다리 안전조치



계단 설치(예)



사다리식 통로

사고성 재해 예방 안전·보건 조치 요약



꼬리표(Tag Out)(예)



점검 중 표지판(예)

끼임 재해 등 예방 조치

-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리프트에 탑승금지 및 탑승구에 운행과 연동되는 문 설치 (규칙 제86조, 법 제84조)
- 기계·설비에 대한 정비·수리·청소 등의 작업 시 전원차단, '조작금지' 표지 게시 (규칙 제92조)
- 벨트·체인 등 회전체에 덮개 설치(규칙 제87조)

부딪힘·교통 재해 예방 조치





출입구 및 반사경

- 출입구 문은 쉽게 여닫는 구조로 설치하여 부딪힘을 방지(규칙 제11조)
- 통로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있는 장해물 제거(규칙 제22조)
-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륜자동차에는 노동자 탑승금지(규칙 제86조)
- 자동차 및 이륜차 운전 시에는 교통법규 준수 및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
- 출입구에서 접촉 등에 의한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 비상등·비상벨 등의 경보장치 또는 반사경 설치

관리적 사항

- 재해발생원인 조사 및 그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법 제57조)
-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게시(법 제37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월 1~2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법 제29조, 일부 업종 제외)
-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는 안전인증제품으로 지급(법 제84조)

※ 법 :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노동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준수(법 제6조)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작업 시 안전모·안전대(벨트) 등 착용(규칙 제32조)
- 이륜차 운전 시 승차용 안전모 착용(규칙 제32조), 교통법규 준수 및 전조등 켜기
- 기계·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 해체 또는 사용정지 금지(규칙 제93조)
- 물건은 가볍게 들고 눈높이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계단·통로 통행

02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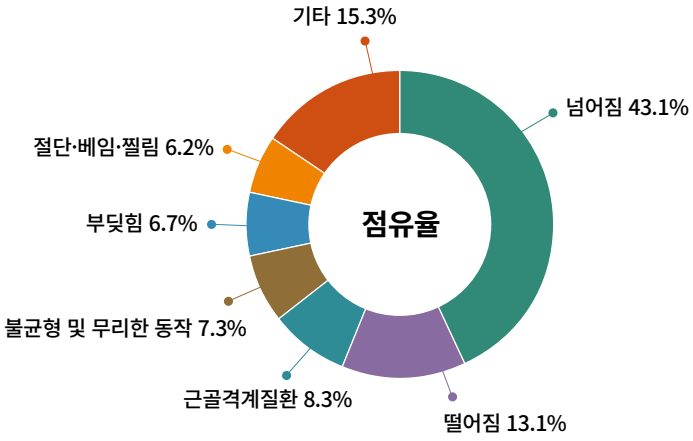
업무내용 빌딩·아파트·상가 등 집합건물 내에서 수행하는 실내 청소, 보일러 등 설비운전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

사고형태 넘어짐과 떨어짐 재해가 전체의 56.2% 차지

재해특성

2025년 기준 재해발생형태 분석결과

형태별	재해자 수(명)	점유율(%)
넘어짐	1,892	43.1
떨어짐	576	13.1
근골격계질환	366	8.3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319	7.3
부딪힘	294	6.7
절단·베임·찔림	271	6.2
기타	671	15.3
계	4,389	100



노동자 확인 및 준수사항

- 작업 전 점검 및 정리정돈, 안전·보건사항 준수
- 사업장 내 통행 시 안전통로 이용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보고
- 기계·설비 등의 재가동 전 다른 노동자의 작업여부 확인
- 작업 전 방호장치 이상여부 확인, 방호장치 상태, 성능 확인
- 안전수칙 및 비상 시 응급조치 요령 숙지 및 준수

사업주 확인 및 준수사항

- 기계·기구, 설비, 작업조건 등에 대한 위험성, 점검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
- 안전통로 확보 및 유지, 점검 등 지속적 관리
- 안전인증보호구 선정·지급 및 보호구 착용여부 수시 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건강보호
-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방호조치 실시

주요 작업별 사망재해 내용

아파트

계단 통행 또는 청소 작업
- 기계실·변전실 통행 중 계단에서 넘어짐
- 아파트 복도계단을 뒷걸음질하며 청소하던 중 넘어짐
- 계단을 내려오던 중 실족

높은 곳에서의 작업
- 배수관·침전조·집수정 등 개구부 통행 중 떨어짐
- 옹벽 위에서 작업 또는 통행 중 미끄러지거나 실족
- 지붕(5층 건물) 방수공사 중 떨어짐

이동식 사다리 작업
-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실족하거나 사다리가 넘어짐(넝쿨제거, 지붕청소, 조경, 조명교체 작업 등)
-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실족

청소·순찰 시 차량과의 접촉
- 지하 주차장 청소 작업 중 진입차에 부딪힘
- 새벽·심야 순찰 중 차에 부딪힘
- 후진하는 폐기물처리 트럭에 부딪힘

기타 작업
- 연삭기 작업 중 감전, 승강기 내부 피트로 떨어짐, 야간 순찰 중 넘어짐, 난방히터에 의한 화재 등

대형 건물(빌딩, 상가, 청사)

기계식 주차장치 운영
- 내부 출입 시 외부에서 주차기 기동으로 떨어짐
- 설비내부 진입 혹은 수리 중 팔레트 위 또는 빈 공간으로 떨어짐
- 점검 시 수동조작으로 팔레트 탑승 중 떨어짐

승강기 작업
- 승강기 수리 또는 위치 확인 작업 중 수동으로 문을 열다 피트 내로 떨어짐

불안정한 개구부 덮개
- 개구부 철판 부식 또는 휘면서 떨어짐
- 불안정하게 놓인 덮개 밟고 떨어짐

이동식 사다리 작업
-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실족

청소 작업 시 차량과의 접촉
- 청사 구내에서의 청소 작업 중 진입차에 부딪힘

계단 통행 또는 청소 작업
- 계단에서 통행 또는 청소 작업 중 넘어짐

기타 작업
- 제설 작업 중 넘어짐,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짐, 집수정 개구부로 떨어짐, 기계실 내에서 작업 중 감전사고 등

사고사망재해 이렇게 예방합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
- 통로의 끝, 개구부, 계단 등에 안전난간, 울타리 및 덮개 설치
- 기계실, 집수정, 계단 등의 통로는 75lx 이상 조도 확보
- 벨트, 체인 등 회전체에 덮개 설치
-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청결하게 유지
- 사다리 대신 이동식 비계나 말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토록 지시
-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선정, 지급 및 착용여부 수시 관리
- 사고사례,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보호구의 성능유지, 관리 및 해당 개인보호구 반드시 착용
- 방호장치 해체금지 및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보고
- 작업 전 현장점검 및 정리정돈, 작업복장 점검
- 기계, 설비류 및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 경고표지 내용 숙지 및 이행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사항 준수

주요 재해 내용



넘어짐 사고(야간 순찰 중 계단에서 넘어짐)

발생 원인
- 신발 등 복장의 착용상태가 미흡
- 야간 시 이동통로의 조명 미설치로 시야 확보 미흡
- 계단의 미끄러짐 방지조치 및 안전시설 미흡

예방 대책
- 신발 등 의복을 단정히 착용
- 조명 등을 설치하거나 휴대용 랜턴을 사용하여 시야 확보
-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떨어짐 사고(옹벽 위에서 전지 작업 시 떨어짐)

발생 원인
- 떨어짐 방지조치 및 안전난간 등 설비조치 미흡
- 출입금지 조치 및 떨어짐 위험 안내표지 미흡
- 보호구 미지급 및 착용 미흡

예방 대책
- 위험한 작업장소에 고소작업대 또는 안전난간 설치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 표지 설치
-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끼임 사고(중량물 운반 중 손가락 끼임)

발생 원인
- 적절한 운반보조설비 미사용
- 인력으로 중량물을 무리하게 운반
- 중량물에 대한 올바른 취급방법 미숙지

예방 대책
- 이동대차 등 운반보조설비 사용
- 크기, 무게, 형태 등을 고려하여 2인 1조 작업
-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베임 사고(통조림 깡통의 날카로운 부분에 손등 베임)

발생 원인
- 안전장갑 등 보호구 미착용
- 날카로운 물건 취급 시 수공구 미사용
- 분리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예방 대책
- 베임방지를 위한 안전장갑 착용
- 집게 등 보조공구 사용
- 재해 사례 등을 통한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보건 수칙

안전·보건 수칙	행동요령
작업자 안전통로 확보	기계실 내부 공간이 과도하게 비좁거나 통로에 물건을 방치할 경우, 야간 순찰 시 넘어짐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정리정돈 및 충분한 통로 확보
보행 전 장해물 확인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미끄러짐 위험이 있고, 야간 순찰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주위 장해요인 확인
계단 통행 시 뛰지 않고, 난간을 잡고 이동	계단을 통행할 때 헛발을 딛거나, 미끄러워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이동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안전대 착용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이동식) 틀비계나 말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안전모 착용 및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청소차량 작업 시 신호수 배치	작업자 또는 통행인이 청소작업 차량을 보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
작업장 정리정돈 생활화	건물 내부 기계실이나 창고의 경우 공간이 좁기 때문에 넘어짐, 부딪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정리정돈을 생활화
기계·설비 회전체 덮개 설치	펌프, 모터, 커플링, 콤프레샤 등 회전체에 접촉할 경우 말림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 울 등 방호조치 설치
작업 전·후 스트레칭	출근 직후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갑자기 작업을 할 경우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져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스트레칭 실시(작업 후에도 동일)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2인 1조 작업	자재 등 무거운 중량물을 들 때 허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2인 이상 작업

0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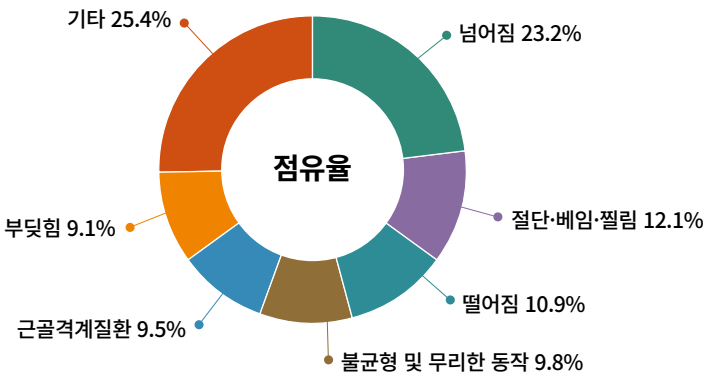
업무내용 도·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각종 배달·판매 등

사고형태 넘어짐 재해가 가장 많으며, 절단·베임·찔림, 떨어짐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

재해특성

2025년 기준 재해발생형태 분석결과

형태별	재해자 수(명)	점유율(%)
넘어짐	2,056	23.2
절단·베임·찔림	1,075	12.1
떨어짐	965	10.9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870	9.8
근골격계질환	838	9.5
부딪힘	810	9.1
기타	2,248	25.4
계	8,862	100



노동자 확인 및 준수사항

- 작업 전 반드시 전신 스트레칭 등 간단한 체조 실시
- 작업 시작 전 안전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작업복장 점검
- 보행 중 장해물 확인 및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실시
- 중량물 운반 시 안전한 작업방법 준용 및 2인 1조 작업 실시
- 대형 화물차 입고 등 창고 작업 시 주변 확인 철저

사업주 확인 및 준수사항

- 작업여건 등에 대한 위험성 및 점검요령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적 실시
- 안전통로 및 작업바닥 확보 및 유지, 점검 등 지속 관리
- 통행로 주변 기계, 기구의 위험 부분에 덮개 등의 안전조치
- 대형 화물차 입고 시 외부인에 대해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안전한 작업방법 실시
- 지속 반복되는 운반작업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주요 작업별 사망재해 내용

차량 운행
- 도로교통사고

화물차량 적재함에서의 적재·하역 작업
- 철재류 묶을 때 적재불량, 끈 끊어져 붕괴
- 적재함에서 작업 또는 내려오던 중 떨어짐
- 호이스트 사용 중 화물 떨어짐

적재물 관리
- 층층이 쌓은 적재물 일부가 접촉에 의해 무너짐
- 중량물 적재대 또는 적재대의 적재물 붕괴
- 세워둔 철판이 접촉에 의해 넘어져 압사

지게차 작업
- 중량물 운반 또는 경사로 이동 중 지게차 넘어짐
- 지게차와 화물차량, 건축물 사이에 끼임
- 지게차 작업공간에 사람이 무단 진입하여 지게차와 충돌

이동식 사다리 작업
-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실족하거나 사다리가 넘어짐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거나 천장 보수, 에어컨 설치 등의 작업 시)

계단 통행 또는 청소 작업
- 사업장 내 계단에서 물건 운반 중 실족
- 건물계단 청소 작업 중 실족

일반작업용 리프트 작업
- 와이어로프 파단 또는 훅 이탈로 운반구 떨어짐
- 타인의 조작에 의한 불시 기동으로 운반구에 끼임
- 운반구 탑승하여 이동 중 떨어짐

높은 장소에서 작업
- 탱크로리 차량 상부에서 검수 작업 중 떨어짐
- 높게 쌓은 적재물 위에서 실족
- 건물 외벽 도장 작업 중 달비계 섬유로프 파단되어 떨어짐

기타 작업
- 냉각탑 수조에 빠짐
- 결빙바닥에서 미끄러짐

사고사망재해 이렇게 예방합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
- 적재물, 차량 상부 작업금지
- 통로(75lx), 보통 작업장소(150lx)에 적정 조도 확보
- 벨트, 체인 등 회전체에 덮개 설치
- 사용설비, 차량 등은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
- 사다리 대신 이동식 비계나 말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토록 지시
-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선정, 지급 및 착용여부 수시 관리
- 사고사례,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보호구의 성능유지, 관리 및 해당 개인보호구 반드시 착용
- 방호장치 해체금지 및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보고
- 작업 전 현장점검 및 정리정돈, 작업복장 점검
- 기계, 설비류 및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 경고표지 내용 숙지 및 이행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사항 준수

주요 재해 내용



넘어짐 사고(제품 이송 중 바닥 턱에 걸려 넘어짐)

발생 원인
- 제품 이송 시 시야 확보를 하지 않은 채 과도한 짐 운반
- 통로, 바닥에 돌출부 및 적재물 방치
- 바닥, 통로 등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

예방 대책
- 제품 이송 시 전방 주시 철저 및 이동대차 사용
- 바닥, 통로, 계단은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 유지
- 바닥 등의 턱은 없애거나 주변과 구별되게 구분



떨어짐 사고(사다리 취급 작업 시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떨어짐)

발생 원인
- 자체 제작 사다리 사용(견고하지 않음)
- 사다리 중심에서 몸을 과도하게 내밈(Over-Reaching)
- 사다리 상부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

예방 대책
- 견고한 구조의 사다리 사용(미끄러짐 방지조치 등) 및 아웃트리거 설치
- 사다리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 이상 설치
-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
-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이동식 비계나 말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끼임 사고(지게차 앞바퀴에 발이 끼임)

발생 원인
- 노동자와 지게차 구분 없이 동시 작업
- 지게차 안전장치 미설치 및 전방시야 미확보
- 무자격자 지게차 운행

예방 대책
- 지게차 작업 시 노동자 접근금지
- 지게차 경고음, 경광등 및 대형 후사경 설치
- 유자격자 운전 및 안전운전 실시



절단·베임·찔림사고(칼 또는 회전체가 있는 육절기 등에 베임)

발생 원인
- 육가공 기계 청소·수리 시 전원 미차단
- 칼, 육절기 작업 시 보호구 미착용
- 냉동재료를 충분히 해동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

예방 대책
- 야채, 생선, 육류 등 취급 시 베임방지용 장갑 착용
- 칼 및 전처리 작업 시 집중 및 잡담금지
- 절단, 다듬기, 발골 작업 시 몸 바깥방향으로 칼 작업

안전·보건 수칙

안전·보건 수칙	행동요령
보행 전 장해물 확인	음식물 가공실에서 바닥 물기에 미끄러지거나, 배관, 식품기계, 자재 등에 걸려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 확인 철저
작업자 안전통로 확보	창고 통로에 물건을 방치하거나 기계실 공간이 협소할 경우 작업자가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정리정돈으로 통로 확보
작업장 정리정돈 생활화	기계실, 창고 등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넘어짐, 부딪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리정돈 필수
미끄럼방지용 장화 또는 안전화 착용	음식물 가공실의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름이 묻은 음식물은 바로 제거하고 작업자는 미끄럼방지 장화 또는 안전화를 착용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안전대 착용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이동식 비계나 말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안전모 착용 및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대형 화물 운반 시 작업 반경 내 외부인 출입금지	대형 화물트럭에서 제품을 싣거나 내릴 때 작업자 또는 통행자들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트럭 작업 반경 내에 사람들의 통행금지
칼 등 날카로운 조리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조리 시 칼 등 날카로운 조리기구에 베일 수 있으므로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작업 안전수칙 준수
육절기 등 조리기구 청소 시 기계 정지	육절기, 마늘다지기, 양파절단기 등 회전체가 있는 조리기구를 청소할 경우 끼임·베임 예방을 위해 기계 정지 상태에서 실시
작업 전·후 스트레칭	출근 직후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갑자기 작업을 할 경우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져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스트레칭 실시(작업 후에도 동일)

04

음식 및 숙박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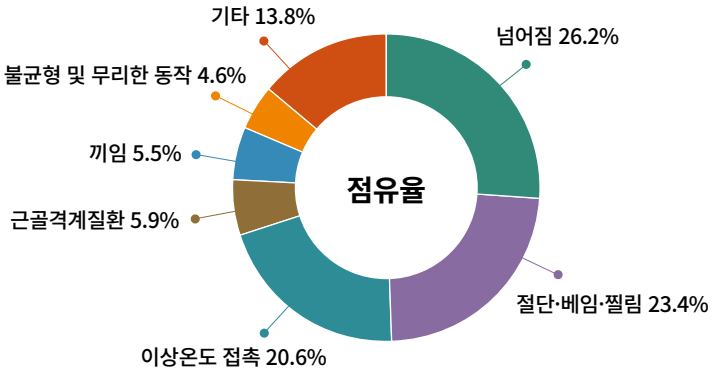
업무내용 식당·주점·빵·생과자 등 판매, 호텔·콘도·수련원 등 숙박업체 등에서 조리, 청소 등 업무 수행

사고형태 넘어짐 재해자가 26.2%이고, 절단·베임·찔림 및 이상온도 접촉에 의한 재해가 각 23.4%, 20.6%로 매우 높음

재해특성

2025년 기준 재해발생형태 분석결과

형태별	재해자 수(명)	점유율(%)
넘어짐	3,412	26.2
절단·베임·찔림	3,048	23.4
이상온도 접촉	2,684	20.6
근골격계질환	763	5.9
끼임	716	5.5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595	4.6
기타	1,794	13.8
계	13,012	100



노동자 확인 및 준수사항

- 작업 시작 전 현장점검 및 정리정돈, 작업복장 점검
- 작업 중 흡연, 음주 절대 금지
- 이륜차 배달 전 전조등, 후사경 등 상태점검 및 승차용 안전모 착용, 교통법규 준수
- 고열체 작업(튀김) 및 운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 제면기 등 끼임 위험부 방호장치 기능유지 및 기능제거 금지

사업주 확인 및 준수사항

-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선정·지급 및 보호구 착용여부 수시 관리
- 작업여건 등에 따른 위험성 및 점검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
- 안전통로 확보 및 유지, 점검 등 지속적 관리
- 유해·위험화학물질 경고표시를 용기 등에 부착, 관련 안전교육 실시
- 지속·반복되는 운반 작업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주요 작업별 사망재해 내용

이륜차 배달 업무 등
-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거나 좌회전하던 중 부딪힘
-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중 부딪힘
- 운행하던 앞차 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
- 반대 차로로 역주행 또는 횡단하던 중 부딪힘
- 주행 중 경계석·가이드레일·가로등·중앙분리대·바리케이드 등 구조물에 부딪치며 넘어져 차량에 치이거나 머리를 다침
-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반대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부딪힘
-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굽은 도로에서 조작 미숙으로 사고 발생
- 반대 차량이 불법 회전·유턴 시 부딪힘
- 중앙선을 넘어오던 불법 차량과 부딪힘
- 무단 횡단자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반대 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 치임 등

차량 배달 업무
- 이륜차 배달 중 도로교통사고

기타 작업
- 덤웨이터 운반구에 끼임, 계단·바닥에서 넘어짐, 벌에 쏘임, 화재, 옹벽에서 떨어짐 등
- 화재, 계단에서 넘어짐 등

사고사망재해 이렇게 예방합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
- 주방 바닥 등 미끄러운 장소에 미끄러짐 방지조치 실시
- 식자재 가공기계, 조리설비 등에 접지 및 안전조치 실시
- 세제,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 화학물질 관리(경고표지, MSDS 게시 등)
- 사용설비, 이륜차 등은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
- 운반대차 등 중량물 운반보조도구 제공 및 2인 1조 작업 지시
-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선정, 지급 및 착용여부 수시 관리
- 사고사례,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미끄럼방지 장화, 장갑 및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바닥 물기,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 수시로 제거 및 정리정돈
- 작업 전 현장점검 및 정리정돈, 작업복장 점검
- 식자재 가공기계·설비류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 경고표지 내용 숙지 및 이행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사항 준수

주요 재해 내용



넘어짐 사고(조리실 이동 중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짐)

발생 원인
- 물기나 음식물 찌꺼기로 바닥 미끄러움
- 정리정돈 미실시로 통로 확보 미흡
- 슬리퍼 등 미끄러질 수 있는 신발 착용

예방 대책
- 바닥은 항상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
-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실시
-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



절단·베임 사고(식자재 손질 중 절단 및 베임)

발생 원인
- 식자재별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음
-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음

예방 대책
- 야채, 생선, 육류 등 취급 시 베임방지용 장갑 착용
- 칼 및 전처리 작업 시 집중 및 잡담금지
- 절단, 다듬기, 발골 작업 시 몸 바깥방향으로 칼 작업



화상 사고(뜨거운 용기를 만지다 손을 데임)

발생 원인
-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적합한 보호구 미착용
- 조리용 용기의 용량을 초과하여 조리

예방 대책
- 뜨거운 조리도구 및 음식용기 취급 시 보호장갑 착용
- 용기 안의 음식물이 넘치지 않도록 적당량 조리
- 화상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 실시



교통사고(오토바이 배달 중 차량과 부딪힘)

발생 원인
- 교통신호 미준수 및 난폭운전
- 전방도로 상태 미확인
- 개인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 교통신호 준수 및 안전운전 실시
- 교차로 통행 시 좌·우 확인 철저 및 전방도로 상태 확인
- 승차용 개인보호구(안전모, 무릎보호대, 장갑) 착용

안전·보건 수칙

안전·보건 수칙	행동요령
보행 전 장해물 확인	주방·홀 등은 물기가 있어 미끄러짐 위험이 있고, 바닥에 배관, 식품기계, 자재 등이 있을 경우 걸려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변 확인
조리실 바닥 물기 및 기름기 제거	주방은 물이나 기름을 취급하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수시 제거, 청결상태 유지
미끄럼방지 장화 또는 안전화 착용	주방에서 물이나 기름으로 인한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에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작업자는 미끄럼방지 장화 또는 안전화 착용
계단 통행 시 뛰지 않고, 난간 잡고 이동	계단을 통행할 때 헛발을 딛거나, 미끄러워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이동
오토바이 배달 시 안전모 착용, 교통신호 준수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시 미끄러지거나 순간 균형 상실로 넘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 실시
뜨거운 국물·용기 취급 시 잡담금지 및 집중	주방이나 홀에서 뜨거운 음식물을 나를 때 엎지르지 않도록, 미끄러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
화기 사용·튀김 작업 시 소화기 비치	주방에서 LPG나 등유 등의 누출, 식용유 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화기 비치
날카로운 조리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칼 등 날카로운 조리기구를 다룰 때 순간적인 실수로 베일 수 있으므로 베임방지용 안전장갑을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 안전수칙 준수
조리기구 청소 시 기계 가동 정지	회전체가 있는 육절기, 마늘다지기, 양파절단기 등 조리기구를 청소할 경우 감김, 끼임, 베임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구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실시
식자재 가공기계 회전체에 덮개 설치	고속으로 회전하는 육절기 등 조리기구는 테두리에 안전덮개를 설치하고 사용

0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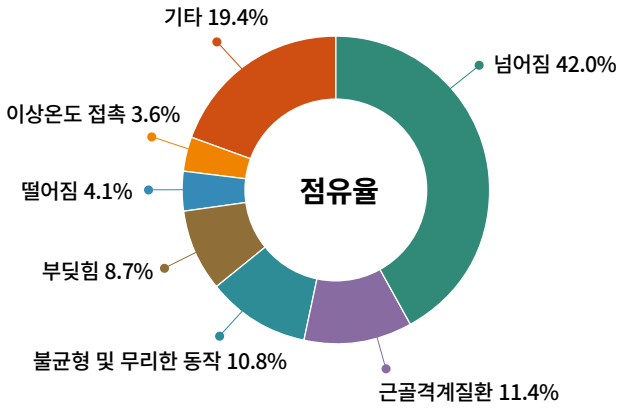
업무내용 병원, 의원 등 의료관련 서비스사업, 양로·노인요양 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복지관련 서비스사업, 어린이집 등 보육관련 서비스사업

사고형태 넘어짐 재해가 42.0%로 가장 많으며 근골격계질환과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이 각 11.4%, 10.8% 발생

재해특성

2025년 기준 재해발생형태 분석결과

형태별	재해자 수(명)	점유율(%)
넘어짐	3,354	42.0
근골격계질환	915	11.4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864	10.8
부딪힘	699	8.7
떨어짐	325	4.1
이상온도 접촉	290	3.6
기타	1,545	19.4
계	7,992	100



노동자 확인 및 준수사항

-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
- 계단, 복도 등 이동통로에 물건 적재금지, 물기 등 이물질 제거
- 이동 시 서두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주위를 살핌
- 환자 운반 시 2인 1조 작업 등 안전한 방법으로 이행
-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 및 안전한 작업방법 확인·이행
- 결핵 등 감염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

사업주 확인 및 준수사항

- 안전인증 등 적정한 보호구 선정·지급 및 보호구 착용여부 수시 관리
- 위험경고, 안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판 부착 등 예방 활동 강화
- 화장실, 목욕실, 세탁실 등 넘어짐 예방을 위한 미끄러짐 방지조치
-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반복동작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개선
- 기계실 등 위험장소의 안전통로 확보 등 유지·보수
- 유해·위험화학물질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게시 및 관련 안전교육 실시

주요 재해 내용



넘어짐 사고(목욕탕 출입 시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짐)

발생 원인
- 맨발로 급하게 뛰어서 이동
- 바닥에 물기 등 미끄러짐 위험이 있는 물질을 그대로 방치
- 이동 시 바닥 상태를 확인하지 않음

예방 대책
- 목욕탕 사용 후 내부 바닥 및 입구를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
- 목욕탕 내부에서는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
- 목욕탕, 화장실 등 미끄러짐 위험이 있는 장소 이동 시 바닥 등 주변 확인



떨어짐 사고(높은 곳의 물건을 꺼내려다 떨어짐)

발생 원인
- 의자를 용도 외로 사용
- 중심을 잃을 수 있는 무리한 동작 또는 자세를 취함(Over-Reaching)
- 의자 상부에서 단독으로 작업 실시

예방 대책
- 자주 사용하거나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은 하부에 보관
- 안전한 작업발판(말비계 등) 사용



근골격계질환(수급자를 침대에 올리려다 허리를 다침)

발생 원인
- 수급자의 체중,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
- 단독 업무수행으로 인한 무리한 힘 사용
-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허리 부담

예방 대책
- 2인 이상 공동으로 작업 실시 및 의사소통을 통해 함께 움직임
- 환자를 부축할 때 허리의 힘보다는 다리의 힘 사용
- 가능한 경우 높낮이 조절 침대, 슬라이딩 보드 등의 편의기구 사용



화상 사고(뜨거운 국물이 팔에 쏟아짐)

발생 원인
- 고무장갑, 방수토시 등 미착용
- 뜨거운 국통을 들고 급하게 이동
- 단독으로 무리하게 운반

예방 대책
- 긴 고무장갑, 방수토시 등 착용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
- 작업 전 장갑 손상 상태 등 확인 철저
- 운반대차를 사용하거나 나눠서 무리하지 않게 운반

안전·보건 수칙

안전·보건 수칙	행동요령
작업 또는 이동 시 주변 확인	청소 등 작업 시 물기 또는 이물질에 미끄러지거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변 확인
미끄러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목욕탕, 화장실 등 물기가 있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
계단 통행 시 서두르지 않고, 난간을 잡고 이동	계단 통행 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이동
침대 등 가구 모서리에 완충재 부착	작업 또는 통행 시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침대 등의 가구 모서리에 완충재 등을 부착
휠체어 사용 시 시설물에 부딪힘 주의	좁은 통로를 휠체어로 이동할 때 주변 시설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
뜨거운 물이 담긴 용기 운반 시 충분한 이동통로 확보 등	뜨거운 국 등 운반 시 미끄러짐, 부딪힘에 의해 쏟게 되어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정리정돈 및 이동통로 확보,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기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의자 등을 사용하는 경우 떨어짐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환자 보조 작업은 2인 이상 공동 실시	환자를 침대로 옮기는 등의 작업 시 무리할 경우 허리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실시
기계·설비의 회전체에 덮개 설치	회전체가 있는 동력 기계·설비에 작업자의 손이나 팔 등 신체 일부가 말림 위험이 있으므로 방호덮개 설치
작업 전·후 및 작업 중간에 수시로 스트레칭 실시	몸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작업을 할 경우 허리 부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후 및 중간에 스트레칭 실시

0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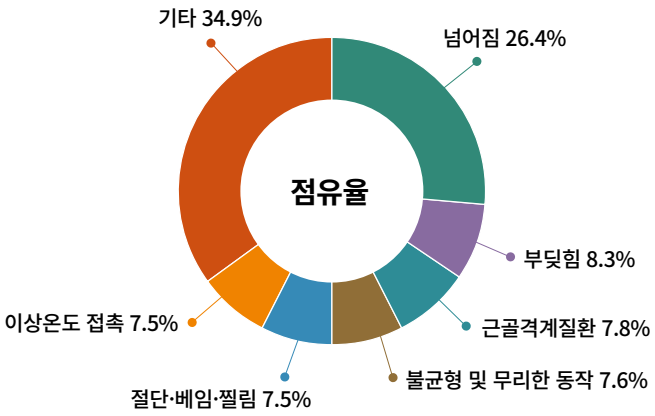
업무내용 거리 청소, 폐기물 수집운반, 공공일자리사업, 청소 및 방제 사업 등

사고형태 넘어짐 재해가 전체의 26.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부딪힘, 근골격계질환 순으로 다발

재해특성

2025년 기준 재해발생형태 분석결과

형태별	재해자 수(명)	점유율(%)
넘어짐	2,047	26.4
부딪힘	639	8.3
근골격계질환	606	7.8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585	7.6
절단·베임·찔림	584	7.5
이상온도 접촉	581	7.5
기타	2,702	34.9
계	7,744	100



노동자 확인 및 준수사항

- 작업 전 스트레칭 및 복장 점검
- 작업현장 주변 수시 확인
- 노동자 간 적극적인 의사소통
- 작업 안전수칙 준수
- 중량물 2인 1조 운반
- 작업 중 흡연, 음주 금지

사업주 확인 및 준수사항

- 작업에 맞는 개인보호구 지급
- 작업 차량 및 기계장치 수시 점검 및 결함 발견 시 교체, 개선
- 유해·위험물질 경고 표시 및 안전교육
- 위험장소 및 설비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주요 작업별 사망재해 내용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출근
- 이륜차를 타고 작업현장 출근 중 교통사고

수거
- 겨울철 도로변 작업 중 뇌출혈 발생
- 도로변 작업 중 인근 차량에 치임
- 진개차가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해 발판에 탑승한 채 이동하던 노동자가 떨어짐
- 차량이 살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발판에 탑승한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
- 수거 노동자가 차량 후면에서 작업 중 운전자가 실수로 후진하여 충돌
-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탑승한 채 이동하다가 통신선에 걸려 떨어짐
- 집게차로 쓰레기 운반 중 인근 노동자를 타격
- 대형 폐기물 수거를 위한 집게차의 아웃트리거를 충분히 펼치지 않아 집게차가 중심을 잃으면서 떨어짐

하차
- 적재함 잔여쓰레기 정리 중 운전자가 파카 잠금버튼을 눌러 끼임
- 폐기물을 소각장에 투입하던 중 인근 노동자가 치여 소각장으로 떨어짐

선별
- 재활용품 선별장 입구를 지나던 중 인근 지게차와 부딪힘

처리
-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하역 작업 중 차량 장비에 끼임
- 건설폐기물 처리 중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어 과다출혈
- 건설폐기물 사업장에서 페이로더 기사가 노동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

공공일자리사업

출근
- 이륜차를 타고 작업현장으로 출근 중 교통사고
- 일자리사업 참여를 위해 차량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 중 도로변 아래로 떨어짐

작업
- 도로변 쓰레기 수거를 위해 도로변 이동 중 인근 차량에 치임
- 도로변 쓰레기 수거를 위해 도로변 이동 중 차량을 피하려다가 도로변 아래로 떨어짐
- 도로변 꽃길 조성 중 어지럼증으로 뒤로 넘어져 인근 차량에 치임
- 공공근로사업 중 절단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 맞음
- 옹벽정리 작업 중 도로변 아래로 떨어짐
- 차량 위에서 수거한 나뭇가지 정리 중 중심을 잃고 도로변 아래로 떨어짐

청소 및 방제 사업

작업
- 건물 유리청소를 위한 달비계 설치 중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떨어짐
- 건물 벽면 청소 중 지면으로 떨어짐

사고사망재해 이렇게 예방합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
- 차량 후미에 노동자 탑승금지 지시
- 보행통로(75lx), 보통 작업장소(150lx)에 적정 조도 확보
- 벨트, 체인 등 회전체에 덮개 설치
- 사용설비, 차량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
- 사다리는 고정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거나 2인 1조 작업 지시
-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선정·지급 및 착용여부 수시 관리
- 사고사례,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성능 유지·관리
- 방호장치 해체금지 및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보고
- 작업 전 현장점검 및 정리정돈, 작업복장 점검
- 기계, 설비류 및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교통법규 준수
- 경고표지 내용 숙지 및 이행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사항 준수

주요 재해 내용



넘어짐 사고(바닥에 비닐을 밟고 넘어짐)

발생 원인
- 신발 등 복장의 착용 상태 미흡
- 바닥, 전방 시야 확보 미흡
- 무리하게 뛰어서 이동

예방 대책
- 미끄럼방지 신발 등 의복을 단정히 착용
- 이동 시 바닥의 장해물을 확인하며 작업
- 뛰거나 서두르지 않기



근골격계질환(폐기물 상차 중 어깨나 허리 다침)

발생 원인
- 급격하고 무리한 힘의 사용
- 단독으로 중량물 취급
- 중량물에 대한 올바른 취급방법 미숙지

예방 대책
- 충분한 휴식과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 중량물은 2인 이상 공동작업
- 다리 힘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떨어짐 사고(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짐)

발생 원인
- 폐기물 수거차량의 적재함 또는 발판에 탑승하여 이동
- 개인보호구 미착용
- 급회전, 과속 등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

예방 대책
- 차량 조수석에 탑승 후 이동하거나 걸어서 이동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차량 운전자와 수거 노동자 간 충분한 의사소통



떨어짐 사고(중량물 운반 중 미끄러져 발등 위로 떨어짐)

발생 원인
- 적절한 운반보조설비를 사용하지 않음
- 인력으로 무거운 중량물을 무리하게 운반
- 중량물에 대한 올바른 취급방법 미숙지

예방 대책
- 차량 리프트 등 운반보조설비 사용
- 크기, 무게, 형태 등을 고려하여 2인 1조 작업
-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안전·보건 수칙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안전·보건 수칙	행동요령
안전한 출퇴근 수단 활용	출퇴근 시 교통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차 운전은 자제하고, 교통신호 준수
작업 전·후 스트레칭	출근 직후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갑자기 작업을 할 경우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져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스트레칭 실시(작업 후에도 동일)
보행 전 장해물 확인	외부 작업을 할 때 눈이나 물기에 미끄러지거나 도로턱 등에 걸려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바닥 상태 우선 확인
도로 청소 시 반사판이 부착된 작업복 착용	도로를 청소할 때 눈에 띄지 않는 복장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옷에 반사판을 부착하거나 반사판 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도로변 작업 시 경고표지판 설치	도로변 화단정리, 가로수 가지치기, 쓰레기 청소작업 등을 할 때 30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경고표지판 설치
청소차량 운행 시 제한속도 준수	청소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수칙을 지키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
청소차량 작업 시 신호수 배치	청소 작업에 트럭을 이용할 경우 작업자 또는 통행자가 차량을 보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유도자 배치
쓰레기봉투 수거 시 날카로운 물체 사전 확인	쓰레기봉투에 담긴 물품 중 유리 조각이나 소형 꼬챙이 등에 베이거나 찔림 위험이 있으므로 베임(찔림)방지 장갑을 지급·착용하고, 수거 시 내용물 확인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2인 1조 작업	대형 폐기물 등 중량물을 들 때 어깨나 허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2인 이상 작업
차량 뒤편 매달려 타기 금지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이용해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수거할 때, 발판에 올라 이동하다가 떨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장거리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단거리는 도보이동하면서 작업
차량 상부 작업 시 안전모 착용	트럭 적재함에 쌓인 물품 등으로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떨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 상부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

공공일자리사업

안전·보건 수칙	행동요령
작업 준비	작업 전날 과도한 음주 자제
안전한 출퇴근	이륜차 등을 이용한 출근 시 신호준수 등으로 교통재해 예방
작업현장 이동	공공일자리사업 시 옹벽이나 경사면 이동 자제
도로변 작업 주의	도로변 환경정비 시 작업안내표지 후방 게시 및 차량 유도자 배치
떨어짐 주의	불법광고물 제거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보호구 착용(사다리 사용금지)
전지 작업 시 안전거리 확보	작업자는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인근 노동자는 작업공간 진입금지

청소 및 방제 사업

안전·보건 수칙	행동요령
개인보호구 착용	작업에 맞는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교육	화학물질 사용 시 물질의 위험성과 재해 예방을 위한 MSDS 교육 실시
떨어짐 주의	건물주변 청소작업 시 (이동식) 틀비계나 말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건물 외벽 청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는 로프를 사용하고, 노동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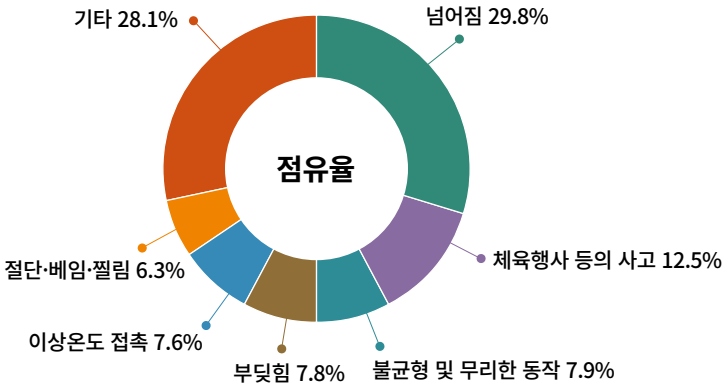
07 교육서비스업

업무내용 유아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 직업훈련학원, 특수교육기관, 개인교습소 등
사고형태 단체급식과 관련된 넘어짐 재해 다발

재해특성

2025년 기준 재해발생형태 분석결과

형태별	재해자 수(명)	점유율(%)
넘어짐	313	29.8
체육행사 등의 사고	131	12.5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83	7.9
부딪힘	82	7.8
이상온도 접촉	80	7.6
절단·베임·찔림	66	6.3
기타	295	28.1
계	1,050	100



노동자 확인 및 준수사항

- 작업 시작 전 현장점검 및 정리정돈, 작업복장 점검
- 보호구의 성능 유지, 관리 및 해당 개인보호구 반드시 착용
- 중량물 운반 시 안전한 작업방법 준용 및 2인 1조 작업 실시
- 고열체 작업(튀김) 및 운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 제면기 등 끼임 위험부 방호장치 기능유지 및 기능제거 금지

사업주 확인 및 준수사항

- 세미기, 회전식 국솥 등 급식실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및 사용방법 교육 등 안전관리
- 통로 및 작업바닥 안전 확보 및 유지, 점검 등 지속적 관리
- 통행로 주변 기계·기구의 위험 부분에 덮개 등의 안전조치
- 방호장치 설치, 접지의 자체점검 및 결함 발견 시 교체 또는 개선
- 지속 반복되는 운반 작업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전기 기계·기구의 충전부(전기가 흐르는 부분)는 절연조치

주요 재해 내용



넘어짐 사고(조리실 이동 중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짐)

발생 원인
- 물기나 음식물 찌꺼기로 바닥 미끄러움
- 정리정돈 미실시로 통로 확보 미흡
- 슬리퍼 등 미끄러질 수 있는 신발 착용

예방 대책
- 바닥은 항상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
-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실시
-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



끼임 사고(채소절단기 칼날에 손가락 끼임)

발생 원인
- 면장갑 착용
- 투입 보조도구 미사용
- 전원차단 미확인 및 안전보건표지 미흡

예방 대책
- 면장갑 착용금지
- 투입봉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 실시
- 청소, 점검, 이물질 제거 시에 전원차단 철저



화상 사고(뜨거운 용기를 만지다 손을 데임)

발생 원인
-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적합한 보호구 미착용
- 용기의 용량을 초과하여 음식물 조리·운반
- 화상재해 발생위험에 대한 안전인식 부족

예방 대책
- 뜨거운 음식용기 취급 시 보호장갑 착용
- 용기 안의 음식물이 넘치지 않도록 적당량 취급
- 화상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 실시



절단·베임 사고(식자재 손질 중 절단 및 베임)

발생 원인
- 식자재별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음
- 보호구 미착용
- 주변인과 잡담 등으로 작업에 집중하지 않음

예방 대책
- 야채, 생선, 육류 등 취급 시 베임방지용 장갑 착용
- 칼 및 전처리 작업 시 집중 및 잡담금지
- 절단, 다듬기, 발골 작업 시 몸 바깥방향으로 칼 작업

안전·보건 수칙

안전·보건 수칙	행동요령
보행 전 장해물 확인	급식실은 물기에 미끄러지거나, 배관, 식품기계, 자재 등에 걸려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 확인 철저
조리실 바닥 물기 및 기름기 수시 제거	조리실 바닥은 물기나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수시로 제거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
미끄럼방지 장화 또는 안전화 착용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바닥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작업자는 미끄럼방지 장화 또는 안전화를 착용
계단 통행 시 뛰지 않고, 난간 잡고 이동	계단을 통행할 때 헛발을 딛거나, 미끄러워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이동
뜨거운 국물, 용기 취급 시 잡담금지 및 집중	뜨거운 음식물을 나를 때 미끄러지거나 부딪힘 등에 의해 엎지르게 되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으므로 정신을 집중하고 주변정리를 통해 활동 공간 확보
화기 사용 또는 튀김 작업 시 소화기 비치	주방에서 LPG나 LNG 등이 누출되거나 식용유가 과열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화기 비치
칼 등 날카로운 조리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칼 등 날카로운 조리기구에 베일 수 있으므로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
작업장 정리정돈 생활화	기계실, 창고 등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넘어짐, 부딪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리정돈이 필수
작업 전·후 스트레칭	출근 직후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갑자기 작업을 할 경우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져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스트레칭 실시(작업 후에도 동일)
식판·음식물 운반 시 적당량 운반	급식실에서 식판이나 음식물을 과도하게 들어 운반할 경우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엎질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적당량만 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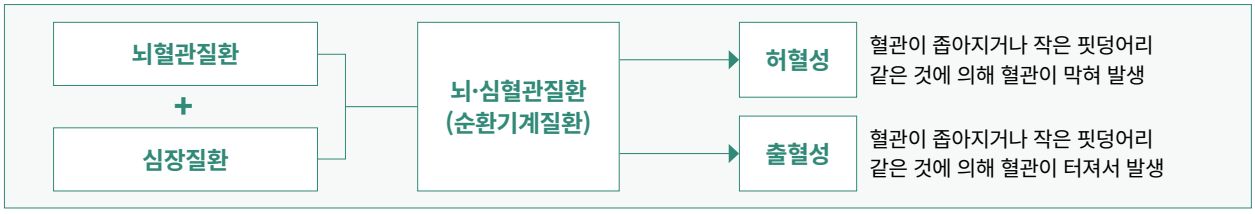
08

뇌·심혈관질환 예방

뇌·심혈관질환이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합친 용어로 순환기계질환이라고도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작은 핏덩어리 같은 것에 의해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심혈관질환과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심혈관질환으로 구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플레이스토어(Android), 앱스토어(iOS)에서 '산업안전포털' 검색 후 앱 설치 → 전체메뉴 → 사업신청·조회 → 기타사업 조회 →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활동 지원사업 →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

뇌·심혈관질환이란?



작업 관련 뇌·심혈관질환이란?

작업 관련 인자가 발병요인으로 일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을 말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요인 평가하기

구분			위험요인	평가(O/X)
교정 가능 요인	개인적 요인	건강상태 요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생활습관 요인	흡연, 운동부족	
	작업 관련 요인	화학적 요인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틸렌클로라이드, 니트로글리세린	
		물리적 요인	소음, 온열작업, 한랭작업	
		사회 심리적 요인	업무량 및 업무자율성	
		작업 관리적 요인	교대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무	
		복합적 요인	운전 작업	
교정 불가능 요인	개인적 요인	유전적 요인	연령, 성, 유전, 성격	
	작업 관련 요인	정신적 요인	심각한 급성 심리적 스트레스	
		신체적 요인	급작스럽게 과도한 힘 사용	

뇌·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

예방 단계		내용
1차	교정을 통한 근원적인 예방 단계	• 뇌·심혈관질환의 교정가능 위험요인을 제거, 기초질환(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등) 관리
2차	뇌·심혈관질환 질병 단계이나 아직 본인이 못 느끼는 단계	• 뇌·심혈관질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방지 • 뇌·심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평생관리
3차	뇌·심혈관질환이 이미 발병한 상황에서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보전하는 단계	• 재활치료를 통한 직장 복귀

09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적인 영향도 있지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직무스트레스)는 일터에서의 조직문화, 지원체계, 조직 내 관계 등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직무스트레스 원인

- 업무시간, 교대근무 등 시간적인 업무 부하에 따른 압박
-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등 대인관계 갈등
- 고용불안, 성차별, 고객응대업무 등

직무스트레스 평가



스마트폰으로 '나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플레이스토어(Android), 앱스토어(iOS)에서 '산업안전포털' 검색 후 앱 설치 → 전체메뉴 → 사업신청 · 조회 → 건강지원 신청 → 직장인 마음 쓰담쓰담 → 마음진단 테스트 → 직무스트레스

나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알기(감정노동 연계형)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점
물리적 환경	01.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02. 나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1	2	3	4	
직무 요구	03.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1	2	3	4	
	04.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1	2	3	4	
	05. 직장의 생산성 향상이나 목적달성을 위한 강요나 압박을 받는다.	1	2	3	4	
직무 자율	06.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다.	4	3	2	1	
	07. 나의 업무량과 작업 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4	3	2	1	
관계 갈등	08. 나의 상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3	2	1	
	09. 나의 동료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3	2	1	
직무 불안정	10. 직장 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1	2	3	4	
	11.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2	3	4	
조직 체계	12.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예: 승진, 부서배치) 등의 정책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4	3	2	1	
	1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4	3	2	1	
	14. 업무 수행 과정에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4	3	2	1	
	15. 우리 직장의 경영방침과 구성원들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4	3	2	1	
보상 부적절	16. 나의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내 급여·수입은 적절하다.	4	3	2	1	
	17. 내가 쏟는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4	3	2	1	
일-삶의 균형	18. 나의 일과 삶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4	3	2	1	
	19. 나의 일은 나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	4	3	2	1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항목	점수		내용
	남	여	
물리적 환경	7점 이상	6점 이상	물리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쁨
직무요구	8점 이상	10점 이상	직무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직무자율	5점 이상	7점 이상	직무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관계갈등	5점 이상	7점 이상	관계갈등이 상대적으로 높음

항목	점수		내용
	남	여	
직무 불안정	6점 이상	5점 이상	직업이 상대적으로 불안정
조직체계	10점 이상	11점 이상	조직이 상대적으로 비체계적
보상 부적절	6점 이상	5점 이상	보상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적절
일-삶의 균형	6점 이상	6점 이상	일과 삶이 상대적으로 불균형

※ 점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비교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 출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E-G-2-2025)

스트레스 해소 9계명!

균형 있는 식사가 필요하다

- 술과 카페인이 있는 음식 피하기
- 야채와 과일 섭취하기
-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기

적당한 운동을 하자

-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 너무 경쟁적인 운동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깊은 호흡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킨다

- 배를 부풀리며 숨을 천천히 고르게 쉬기
- 자주 긴장을 이완시키기

체념할 줄 알아야 한다

- 바꾸기 힘든 어려운 환경은 빨리 체념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 거절할 줄 아는 결단력과 배짱!

긴장 이완법을 배우자

-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정신적인 긴장도 완화

스케줄을 여유 있게 짜자

-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욕심내지 말기

유머 감각으로 긴장을 해소하자

-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긴장감은 웃음으로 완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 출처: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정착을 위한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2014년)

10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정·작업별 안전작업 방법

※ 본 이북은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산재예방 정보 → 안전보건 자료실 → 안전보건 e-Book → 실무길잡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여객·화물 운수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택배·퀵서비스업)



창고업



육상화물취급업
(이사)



통신업



경마장 운영업



운수부대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기타업



임업



항만 하역업



농업
(작물생산업·농업서비스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축산업



쇄석채취업·토사채굴채취업



양식어업

PART

4

서비스업 사망재해 예방대책

01 서비스업 사망재해 유형

① 교통사고 **081**

② 떨어짐 **082**

③ 넘어짐 **083**

④ 끼임 **084**

⑤ 부딪힘 **085**

02 재해 사례

① 계단 이동 중 넘어져 사망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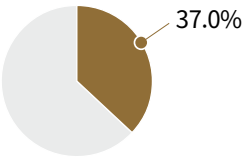
② 이동식 사다리 사용 작업 중 떨어져 사망 **087**

01

서비스업 사망재해 유형

① 교통사고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인한 '25년 사고사망자는
서비스업 전체 사고사망자의 37.0% 점유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재해는 배달 작업의 이륜차 사고가 대부분으로 ① 운행 중 신호위반과 과속, ② 전방주시 및 확인 미흡, ③ 운행 중 휴대폰 통화, 한 손에 배달물을 든 채 운행하는 등 운전자의 불안전한 행동, ④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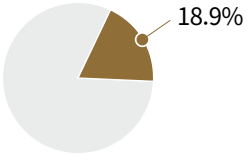
1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불법 운전을 하지 않고 교통법규 준수
2 운행 중 전방의 도로 교통 상황과 도로 상태 확인에 집중
3 운전 중 흡연, 잡담, 휴대폰 통화 등 불필요한 행동은 절대 금지
4 운전 시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반드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하고 전조등 항상 켜기

01

서비스업 사망재해 유형

② 떨어짐

떨어짐으로 인한 '25년 사고사망자는
서비스업 전체 사고사망자의 18.9% 점유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① 사다리 파손이나 헛디딤에 의한 실족, ② 청소차량, 트럭 등 작업발판에 탑승, ③ 트럭 화물칸 적재·포장 작업, 건축물 옥상, 단부 등 높은 곳에서의 불안전한 작업, ④ 달비계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청소 중 구명줄 미설치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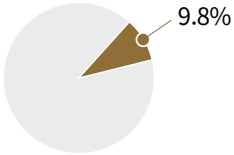
1 사다리는 평탄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고,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만 사용, 반드시 안전모 착용 및 2인 1조 작업 실시
2 쓰레기·폐기물 수거를 위한 이동 시 안전한 승차석에 탑승 및 안전모 착용 철저
3 적재함에 화물로 인해 이동통로가 없는 경우 별도의 작업발판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떨어짐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4 달비계 작업 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옥상 앵커에 달비계 지지로프 결속 및 안전모 착용 철저

01

서비스업 사망재해 유형

③ 넘어짐

넘어짐으로 인한 '25년 사고사망자는
서비스업 전체 사고사망자의 9.8% 점유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① 바닥 및 통로에 물기, 빙판, 기름 등 이물질 미제거 또는 미끄러운 원자재 사용, ② 계단청소 중 부주의, ③ 순찰, 물품운반 시 어두운 지하 계단 보행, ④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헛디뎌 넘어짐 등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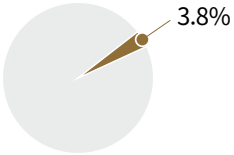
1 작업자 스스로 바닥 상태 확인, 바닥은 청결하게 유지 및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2 계단 청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실시, 슬리퍼 착용금지 등 작업 안전수칙 준수
3 중량물은 나눠서 운반하고 어두운 장소 진입 시 손전등 등 휴대용 조명기기 지참
4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잡고 뛰지 않으며, 계단에 미끄럼방지용 테이프 부착

01

서비스업 사망재해 유형

④ 끼임

끼임으로 인한 '25년 사고사망자는
서비스업 전체 사고사망자의 3.8% 점유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끼임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① 재활용 선별장 내 분쇄기·파쇄기 작업 중 회전날에 끼임, ② 컨베이어 화물 작업 중 회전하는 체인에 말림, ③ 주차리프트에 차량 입고 시 설비의 임의 작동, ④ 청소차량(압축진개차) 개폐장치 레버의 임의 조작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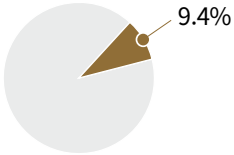
1 물품 투입, 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사용
2 컨베이어 동력전달부, 체인 등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3 주차리프트는 반드시 기계 전원을 차단하고 '사용중지' 또는 '수리중'이라는 표지판 설치 및 조도 확보 후 작업
4 조작레버는 개폐장치의 작동반경 내 작업자의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동

01

서비스업 사망재해 유형

⑤ 부딪힘

부딪힘으로 인한 '25년 사고사망자는
서비스업 전체 사고사망자의 9.4% 점유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① 지게차, (화물)자동차 구내 운행 부주의, ② 부딪힘 위험장소에 유도자 미배치 등 안전조치 미흡, ③ 이동대차 등 운반설비 이용 시 부딪힘 또는 적재물 떨어짐 위험, ④ 통행 중 설비와 부딪힘 등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1. 지게차 운행 시에는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량의 물품을 적재하고, 제한 속도를 지정하여 과속하지 않도록 조치
2. 지게차, 차량 등의 작업장 내 운행경로에는 출입금지 조치 및 유도자를 배치하고, 사각지대에는 반사경 설치
3. 작업자 보행통로로 이동대차 운반금지 및 이동 시에는 적정 속도 준수하고, 최대 적재량 이상 적재금지
4. 불시에 열릴 수 있는 철제문 등 장소·설비에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02

재해 사례

① 계단 이동 중 넘어져 사망

○○아파트에서 미화원이 계단을 통해 지하 공동구역으로 내려가던 중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사망



발생 원인

- **건물 내의 지하계단 이동통로 조도 미확보**
  - 지하계단 이동통로의 조도는 흐린 날 기준으로 조명이 꺼진 상태에는 8lx, 켜진 상태에는 19lx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조도로는 부적정
- **넘어짐, 미끄러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
  - 건물 관리의 미화 작업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고령 노동자가 시력 저하, 운동신경 부족 등으로 인해 어두운 장소에서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

예방 대책

- 계단 등 이동통로에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도 75lx 이상의 조명 설치
- 조명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휴대용 조명기구 비치
- 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02

재해 사례

② 이동식 사다리 사용 작업 중 떨어져 사망

○○○빌딩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탑승장에서 빌딩 경비원이 이동식 사다리(A형) 상단에 올라서서 천장 코너부의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2.2m 아래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발생 원인

- **이동식 사다리 사용방법 부적정**
  - 노동자 단독으로 이동식 사다리 최상단에 서서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떨어짐
-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작업에 노동자에게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미지급, 미착용

예방 대책

- **고소작업 시 떨어짐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 건축물 내의 천장 등과 같이 떨어짐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견고하게 설치된 비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것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떨어짐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
  - 높이 2m 이상의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대 지급·착용
  -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PART

5

주요 지원사업

01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089**

02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092**

03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094**

04 소규모 서비스업 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사업 **095**

05 안전보건교육 지원 제도 **096**

06 안전체험교육 **098**

07 위험성평가 인정 **100**

08 소규모 사업장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103**

09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105**

10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운영 **106**

11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108**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축지원 **110**

13 건강일터 조성지원 **114**

01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사업이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시행 기간**: 연중 수시(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본사(90515)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부정수급 등 참여제한 사업장,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 사업장 제외), 당해 연도 공단이 지원하는 각종 융자·보조지원 사업 결정 사업장

지원 절차



지원 설비

※ 세부 품목은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 참조

- 사고사망 등 재해예방품목 위험기계·기구·설비
- 사고사망 등 재해예방품목 방호·안전장치
- 고용노동부 감독 및 공단 기술지원 등에 따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시설 및 장비
- 자율신청품목 등

우선 선정 기준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사고사망 위험업종
- 최근 3년간('23~'25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사업장(위험도 기준)
- 사업장 규모별 점수 부여
- 최초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지원 결정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
- 상생협력, 체계구축컨설팅, 위험성평가컨설팅 등 참여 후 인정 사업장

지원 금액

구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지원한도액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단, 당해 연도 1회에 한함)

※ 공단 판단금액은 공단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조건이 제한

※ 각각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고위험 업종* 사업장

* 50인 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자 수 상위 6개 업종
  ①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②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 기타섬유제품제조업(20209)
  ④ 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⑤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⑥ 화학비료제조업(20903)

사업 안내

-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유형별/재정지원 선택 후 검색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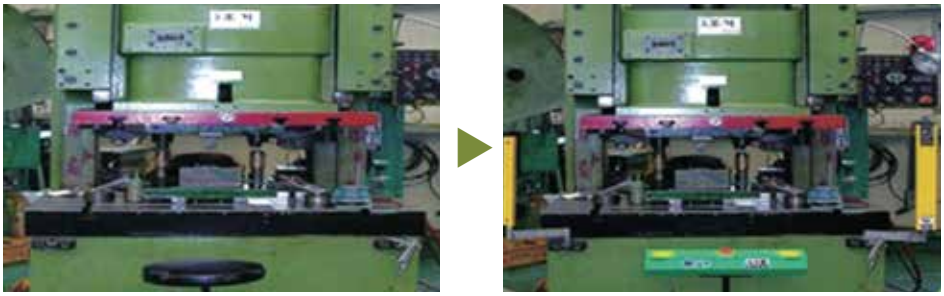
* 위의 메뉴 자료실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1544-3088

개선 사례

프레스 방호장치(광전자식·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사용하는 프레스의 종류 및 작업방법에 적합한 방호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등) 설치



일반작업용 리프트 방호장치 설치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출입문 연동장치와 방호울 설치로 끼임 및 물체에 맞음 재해예방



고소음 발생 설비에 방음부스 설치

방음부스 설치로 청력손실 예방



안전난간 및 사다리 설치

떨어짐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사다리를 설치해 떨어짐 재해예방



02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란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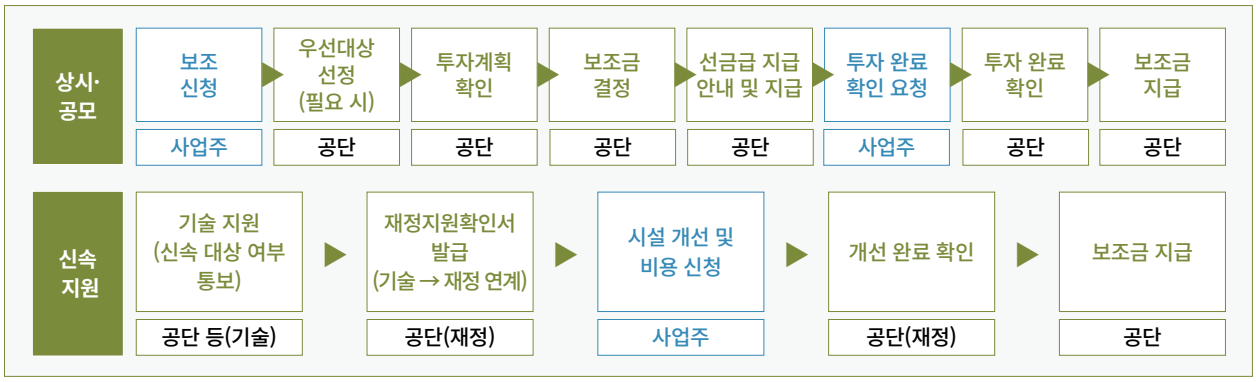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 제외

지원 금액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및 구입금액(공단 판단가격)의 80%(최대 3천만원)

※ 위험성평가 우수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등은 1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절차



지원 품목

신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명	대상설비·작업
1	인공지능(AI) 기반 인체감지시스템(2종)	끼임·충돌 위험구역
2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2종)	고위험 기계설비
3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무인운반차 등 이동형 위험설비
4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고소작업대
5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옵션: 흔들림 방지장치(2종)	천장주행크레인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4종)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품목명	대상설비·작업
7	이동식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동식크레인
8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9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10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7종)	화재·폭발·누출 위험장소
11	전기안전 모니터링시스템(3종)	전기작업 등
12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이륜차(배달, 택배업 등)
13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시스템	끼임 위험설비
14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가시설·구조물(건설업 본사)
15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추락 위험장소
16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관리품목)	3t 미만 전동지게차
17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밀폐공간(화재·폭발장소 제외)
18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2종)	화학공정 또는 실험·연구실
19	근력보조슈트	근골격계 부담작업
20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근골격계 부담작업
21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2종(방진마스크, 귀마개)	분진작업·소음작업
22	자율신청품목	지정품목 외

※ 지원품목은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참조

※ 일부 품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필요에 따라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사협의회 협의를 실시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 가능

03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근원적으로 안전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 **시행 기간**
연중 수시(재원 소진 시까지)

※ **취급 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 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중앙회), iM뱅크,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사업 목적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지원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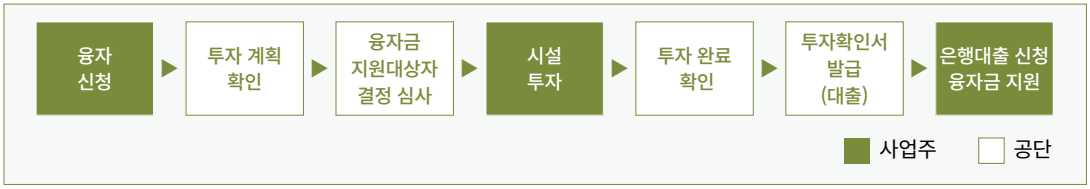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지원 조건: 사업장당 15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지원 가능) 고정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상환)

지원대상설비

- 유해·위험 기계·기구(프레스, 공작기계(CNC·머시닝 센터 등),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개선·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지원 절차



사업 안내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유형별/재정지원 선택 후 검색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 위의 메뉴 '자료실'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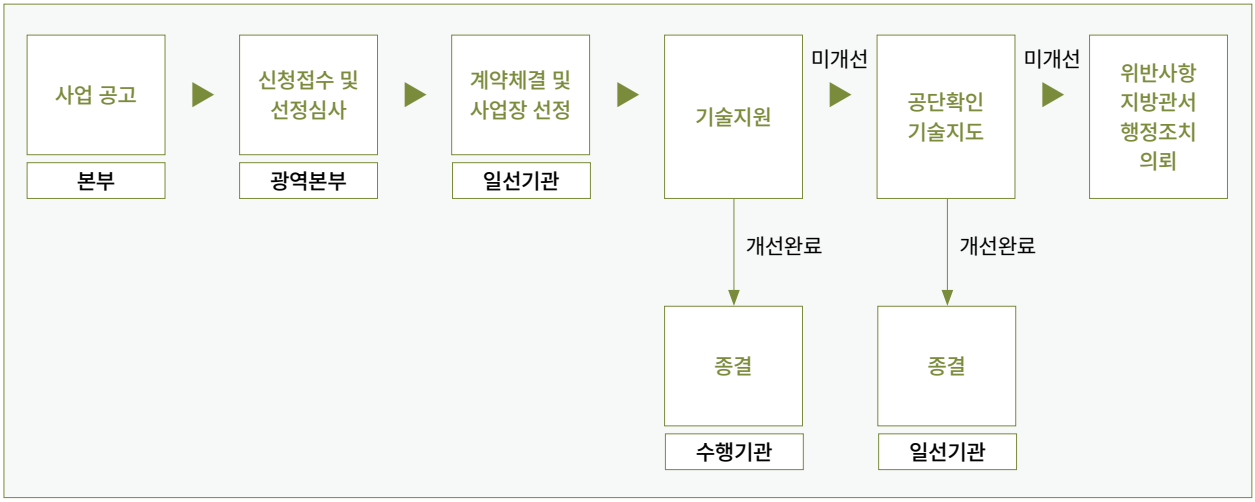
04

소규모 서비스업 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사업

안전보건관리 자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 중 사망사고 위험도가 높은 업종(건물관리업, 음식업, 도소매업)을 선정하여 접근성과 수용도가 높은 관련 비영리법인을 통해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사업추진 절차



지원 대상

- 사업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음식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기술지원 내용

-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직접 원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중심의 기술지원 및 이행실태 확인
-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대책 제시(업종별 주요설비는 필수 평가 실시)
- 당해연도 포함한 최근 3년간 발생재해의 원인 분석 및 대책 제시
-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확인 및 제도 안내
-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및 맞춤형 재해예방 자료 보급 등

05

안전보건교육 지원 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공단에서 전문강사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장 자체교육 시 교육 추진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제도

대상: 교육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

방법: 해당 분야 전문강사가 현장을 방문해 교육 지원

내용: 작업 전 안전점검, 업종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 사례중심 교육

시간: 요청시간(1~2시간)

교육비: 무료

신청: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 → 교육신청 또는 가까운 일선기관 문의

문의처

안전보건교육 대표번호: 1644-2275(현재 위치 관할 일선기관으로 자동 연결)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지역
서울광역본부	02.6711.2915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서울남부지사	02.6924.8722	서울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울동부지사	02.2086.8016	서울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강원지역본부	033.815.1053	강원도 춘천, 원주, 홍천, 인제, 화천, 양구, 횡성, 경기도 가평
강원동부지사	033.820.2544	강원도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양양, 고성, 영월, 정선, 평창
부산광역본부	051.520.0559	부산
울산지역본부	052.226.0519	울산
경남지역본부	055.269.0514	경상남도(김해, 밀양, 양산 제외)
경남동부지사	055.371.7505	김해, 밀양, 양산
광주광역본부	062.949.8716	광주, 나주, 화순, 곡성, 구례, 담양, 장성, 영광, 함평
전북지역본부	063.240.8523	전주, 남원, 정읍, 장수, 임실,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전북서부지사	063.460.3615	익산, 김제, 군산, 부안, 고창
전남지역본부	061.288.8724	목포, 무안, 영암, 강진, 완도, 해남, 장흥, 진도, 신안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지역
전남동부지사	061.689.4916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제주지역본부	064.797.7512	제주특별차지도
인천광역본부	032.510.0643	인천
경기북부지사	031.828.1922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강원도 철원
고양파주지사	031.540.3812	고양, 파주
경기중부지사	032.680.6516	부천, 김포
경기광역본부	031.259.7269	수원, 용인, 화성
경기서부지사	031.481.7555	광명,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안산, 시흥
경기동부지사	031.785.3318	성남, 하남,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경기남부지사	031.690.1915	평택, 오산, 안성
대구광역본부	053.609.0577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및 청도군
대구서부지사	053.650.6818	대구광역시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경북지역본부	054.478.8057	구미, 김천, 영주, 상주, 문경, 안동, 칠곡군 석전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 예천, 의성, 영양, 청송
경북동부지사	054.271.2014	포항, 경주, 영덕, 울릉, 울진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75	대전, 세종, 공주, 논산, 계룡, 보령, 금산, 홍성, 서천, 부여, 청양
충북지역본부	043.230.7173	청주, 진천, 괴산, 보은, 증평, 옥천, 영동
충남지역본부	041.570.3407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예산, 태안
충북북부지사	043.849.1012	충주, 제천, 단양, 음성
담양안전체험교육장	061.383.8294	전남 담양
제천안전체험교육장	043.645.6801	충북 제천
여수안전체험교육장	061.685.9422	전남 여수
익산안전체험교육장	063.859.8911	전북 익산
인천안전체험교육장	032.510.0741	인천

06

안전체험교육

안전체험교육장에 방문하여 다양한 산업의 위험상황 및 사고상황을 직접 또는 간접(가상)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이나 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교육시간의 2배를 해당 연도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제9조제4항

공단 안전체험교육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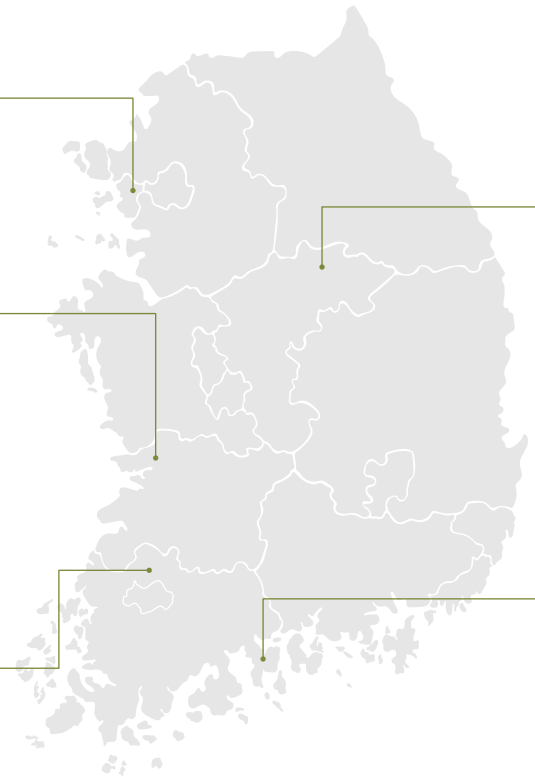
교육장 현황

연번	교육장명	주소	콘텐츠	개관 일자	규모
1	**제천**	충북 제천시 제천북로 143	35종(전 산업)	’19년 3월	1,977.08㎡(599평)
2	**담양**	전남 담양군 금성면 병목로 219	25종(전 산업)	’23년 5월	1,525.37㎡(462평)
3	**여수**	전남 여수시 삼동2길 32	70종(전 산업, 석유화학 중심)	’23년 12월	4,642.72㎡(1,407평)
4	**익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78길 127-49	45종(전 산업)	’24년 12월	4,385.42㎡(1,329평)
5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60종(전 산업)	’25년 12월	3,912.38㎡(1,186평)


인천안전체험교육장


익산안전체험교육장


담양안전체험교육장




제천안전체험교육장


여수안전체험교육장

교육운영

운영시간: 9:00~18:00
휴관일: 주말, 공휴일, 공단에서 정하는 휴일
교육비용: 무료
교육대상: 전 국민 누구나(사업장 근로자, 학생, 일반 시민 등)
교육인원: 20명/1회 내외(인원 초과 시 분반 운영)
교육시간: 1~4시간 내외(교육대상자에 따라 탄력적 운영)

교육내용

산업안전 체험(1~3시간): 안전대 매달리기 체험, 고소작업대 체험, 응급처치 체험 등 약 30~50종 중 필요한 이론교육 및 체험실습 병행실시 (교육장별 체험 설비 상이)
가상안전 체험: 입체영상(3D) 시청 및 가상현실을 통한 위험요소 확인 훈련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 접속 → 안전보건공간교육 → 교육신청 → 교육기관별 교육신청 → 교육/안전보건 체험교육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민간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이용 관련 안내 사항

- 교육장마다 이용금액, 교육일정, 교육과정, 신청방법 등이 다르므로 체험교육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교육장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교육장 목록 및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 접속 → 민간교육기관 교육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07 위험성평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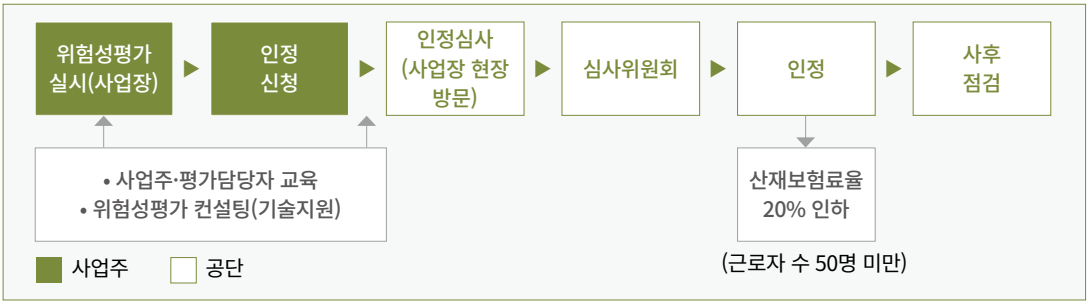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공단 광역·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수로 봅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https://portal.kosha.or.kr)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사업주·담당자 교육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을 통해 공단 또는 공단이 인정한 민간교육기관에서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 중 일부를 컨설팅해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만 해당
- 기술보증기금(KIBO)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보증료율 0.2%p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평가 시 기술성 평가점수 우대, 지원한도가 상향(60억원 → 100억원) 됩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1.5배 우대, 보증(보험)료 20% 할인됩니다.
-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시 우대로 최초 3년간 보증비율(최대 100%) 확대, 보증수수료가 차감(0.2%p)됩니다.

※ 본 서식은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KRAS(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안내 → 위험성평가 인정 →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18.〉

위험성평가 [ ]인정 [ ]재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table>
<tr><td colspan="2">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처리일자</td><td colspan="2">처리기간 2개월 5일</td></tr>
<tr><td rowspan="6">신청인</td><td colspan="2">사업장명
(건설업은 현장명)</td><td colspan="3">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td></tr>
<tr><td colspan="2">대표자 성명</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 colspan="5">사업장 소재지
(건설업은 현장 소재지)</td></tr>
<tr><td colspan="2" rowspan="3">근로자 수(명)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억원)
및 공사기간]</td><td rowspan="3">근로자 상세내역</td><td>외국인 명</td></tr>
<tr><td>기간제·파견 명</td></tr>
<tr><td>고령(만55세 이상) 명</td></tr>
<tr><td>위험성평가
담당자</td><td>성명</td><td>휴대전화번호</td><td colspan="2">전자우편 주소</td></tr>
<tr><td colspan="6">※ 신청인의 사업장에 사내 수급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재(건설업은 제외)</td></tr>
<tr><td rowspan="2">수급인
사업장</td><td colspan="2">수급인 사업장</td><td colspan="3">대표자 성명</td></tr>
<tr><td colspan="2">전화번호</td><td colspan="3">근로자 수(명)</td></tr>
<tr><td rowspan="2">수급인
사업장</td><td colspan="2">수급인 사업장</td><td colspan="3">대표자 성명</td></tr>
<tr><td colspan="2">전화번호</td><td colspan="3">근로자 수(명)</td></tr>
<tr><td rowspan="2">수급인
사업장</td><td colspan="2">수급인 사업장</td><td colspan="3">대표자 성명</td></tr>
<tr><td colspan="2">전화번호</td><td colspan="3">근로자 수(명)</td></tr>
</table>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본 서식은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KRAS(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안내 → 위험성평가 인정 →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12.18.〉

위험성평가 [ ]사업주 교육 [ ]평가담당자 교육 지원 신청서

신청인	사업장명 (건설업은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건설업은 현장 소재지)	
	교육참석자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교육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또는 ○○교육기관장 귀하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업무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위험성평가 교육 참석자 성명, 교육 참석자 휴대전화번호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 업무 처리	교육이수 다음 연도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업무처리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위험성평가 교육 만족도 조사 수행업체	위험성평가 교육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교육이수 다음 연도부터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교육 만족도 조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해당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교육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	→	교육 일정 선택	→	교육 참석	→	교육 이수 통보
신청인		신청인		교육 대상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8

소규모 사업장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사업 내용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업무상 질병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 1,2차 실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2026년 예산
310억원

※ 재원 소진 시에는 신청 및 지원을 종료하므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빠른 시일 내에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 미만)
- 배치전·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지·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 석면 등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

지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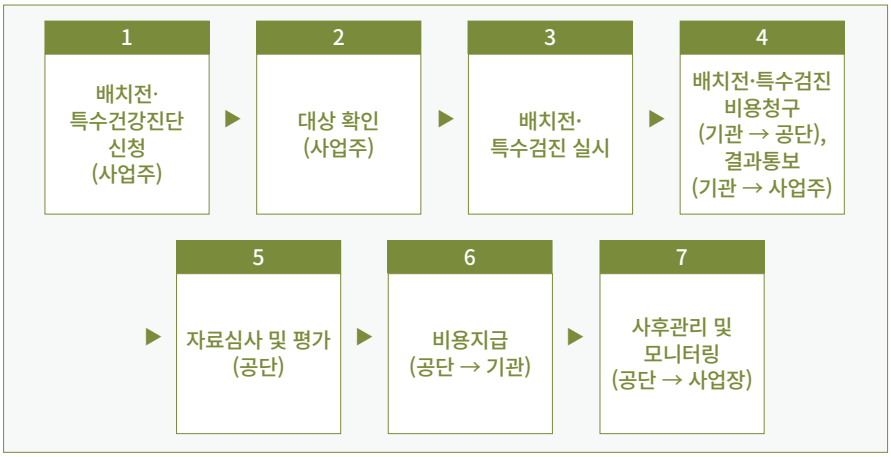
50인 미만 사업장	• 30인 미만: 특검 비용*의 전액 지원 • 30~50인 미만: 특검 비용*의 90% 지원
공동주택	• 특검 비용*의 90% 지원
건설일용직 (원청 건설공사 현장 공사금액 기준)	• 50억원 미만: 특검 비용*의 전액 지원 • 50억~800억원 미만: 특검 비용*의 70% 지원 • 800억원 이상: 특검 비용*의 60% 지원

* 특검 비용: 공단 산정 금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 24에 따른 제1,2차 검사 항목에 대하여 비용지원

지원 신청 및 대상 확인

-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 신청하기
- 신청 후 '비용지원 결과 확인'에서 대상 여부 확인

절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 벤젠, 톨루엔, 메탄올 등 **유기화합물 109종**
- 구리, 납, 수은 등 **금속류 20종**
- 무수 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카리류 8종**
- **금속가공유 1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 소음, 진동 등 **물리적인자 8종**
-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석면 분진 등 **분진 7종**
- **야간작업 2종**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제1항 관련 [별표 23]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사염화탄소 • 아크릴로니트릴 •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 광물성 분진 • 목재 분진 •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 상기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배치전건강진단은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신규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실시)

09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작업환경측정이란 사업주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후 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 내용

작업환경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보유한 사업장(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 미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 21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지원 금액

2026년 예산
315억원

※ 재원 소진 시에는 신청 및 지원을 종료하므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기존 측정사업장

- 사업장당 측정 비용의 80%를 지원
- 최대 지원 가능 금액: 40만원

신규* 측정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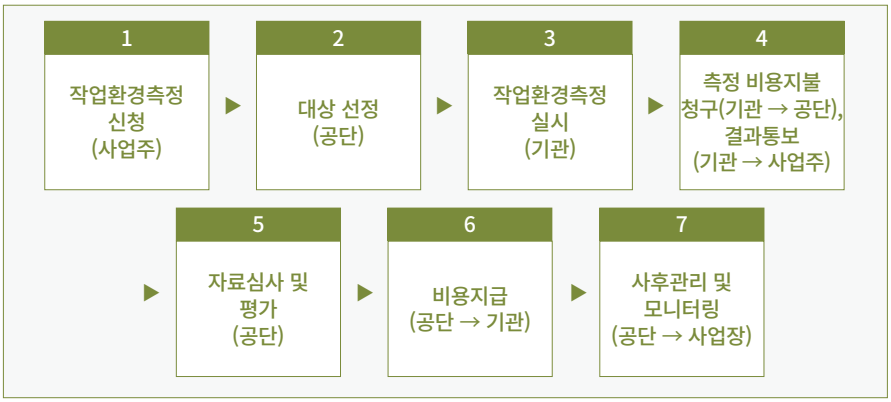
- 측정금액 전액지원(최대 100만원까지)

* 최근 3년 동안('23년 이후)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

지원 신청 및 대상 확인

-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 신청하기
- 신청 후 '비용지원 결과 확인'에서 대상 여부 확인

절차



10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운영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질병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센터(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서비스 내용

- 근로자 건강(질병)상담실 운영(근로자 건강에 대한 모든 상담,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업무 적합성 평가 등)
- 직업환경(작업관리) 상담실 운영
- 근골격계질환 예방실 운영
- 뇌·심혈관질환 예방실 운영
- 심리상담실 운영

일하는 사람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 전문가, 근골격계질환 전문가, 직무스트레스 상담 전문가 등 직업건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운영 시간 및 이용요금

- 운영 시간: 센터별 상이(탄력적 운영)
  ※ 희망하는 사업장은 단체 예약 시 이동건강상담 및 집단 상담 가능
- 이용요금: 전액 무료

이용 가능한 장소

전국 24개 센터 및 22개 분소 운영

근로자건강센터 현황

센터(분소)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 (군포분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KT시화지점 3층 (군포분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군포IT벨리 A동 1202호	www.gswhc.or.kr	031.364.7680 (031.8086.7195)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인천부평분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4층 (인천부평분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지하 1층	www.icwhc.or.kr	032.260.3661 (032.528.1155)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산분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광주광산분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www.gjwhc.or.kr	062.955.6497 (062.941.6497)
대구 근로자건강센터 (서대구분소) (대구달성분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7층 (서대구분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21길 33 (대구달성분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www.dgwhc.or.kr	053.585.5501 (053.584.2406) (053.617.9701)

센터(분소)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남 근로자건강센터 (창원분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창원SK테크노파크 테크동 11층 (창원분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316호	www.knwhc.or.kr	055.713.2400 (070.4270.0240)
서울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중구분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2층 (서울중구분소)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2호	www.suwhc.or.kr	02.838.6497 (02.2268.6497)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성남분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성남분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한하이펙스 A동 지하1층 127호	www.gdwhc.or.kr	031.739.9301 (031.698.2990)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울산북구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울산북구분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북구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www.uswhc.or.kr	052.201.9960 (052.288.7772)
부천 근로자건강센터 (김포양촌분소) (김포고촌분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관리동 3층 (김포양촌분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메카존 나동 243호 (김포고촌분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8번길 105-1 유호빌딩 2층 204호	www.bcwhc.or.kr	032.329.9161 (031.999.7602) (031.998.9165)
충북 근로자건강센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청주미래누리터 5층	www.cbwhc.or.kr	043.218.9415
충남 근로자건강센터 (아산분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J빌딩 2층 (아산분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G-플레이스 405호	www.cnlhc.or.kr	041.522.8993 (041.547.7993)
대전 근로자건강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한신에스메카 1층	www.tjwhc.or.kr	042.936.9571
부산 근로자건강센터 (양산분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부산디지털밸리 1층 (양산분소) 경상남도 양산시 대평들3길 2, 1층	www.bswhc.or.kr	051.329.7300 (055.385.7301)
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 (구미분소)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미근로자문화센터 1층 (구미분소)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지니스센터 213호	www.gbwhc.or.kr	054.475.2511 (054.465.2511)
경기남부 근로자건강센터 (평택분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 2층 (평택분소)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성은상가 1층	www.gnwhc.or.kr	031.205.8960 (031.663.8953)
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YM빌딩 3층	www.jdwhc.or.kr	061.692.9640
전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리팩토리 대불 관리동 2층	www.jnswhc.or.kr	061.462.2900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성동분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A-1406호 (서울성동분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308호	www.sgwhc.or.kr	02.2093.2650 (02.6077.7500)
경산 근로자건강센터 (영천분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근로자복지회관 2층 (영천분소) 경북 영천시 금완로 63 영천상공회의소 1층	www.gsswhc.or.kr	053.853.8579 (054.338.8541)
전북 근로자건강센터 (완주분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팔복지사 2층 (완주분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www.jjwhc.or.kr	063.211.9988 (063.262.7733)
강원 근로자건강센터 (춘천분소)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604호 (춘천분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내	www.강원근로자건강센터.kr	033.745.7289 (033.262.2788)
제주 근로자건강센터 (연동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연동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9 제주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www.jejuwhc.or.kr	064.752.8961 (064.745.8961)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 (남양주분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105호 (남양주분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단로 70번길 6, 진관프라자 2층	www.ggbbwhc.or.kr	031.858.9030 (031.572.9032)
거제 근로자건강센터 (거제분소)	(거제분소)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65	www.geojewhc.or.kr	055.636.0386
충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충남 보령시 터미널길 8	www.충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kr	041.522.8993

11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대형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등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내용

- 직간접 사고 피해자의 심리 안정화
- 일상·직장 생활 복귀 도모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 필요 시 전문적인 치료 연계
-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 관리

일하는 사람들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운영 시간

센터별 상이(탄력적 운영)

직업트라우마센터 현황(전국 24개)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강원 직업트라우마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 근로자건강센터 내)	033.745.7289
거제 직업트라우마센터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65 (거제 근로자건강센터 내)	055.636.0386
경기남부 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경기남부 근로자건강센터 내)	031.205.8960
경기동부 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 내)	031.739.9301
경기북부 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 내)	070.4139.2607
경기서부 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 내)	031.364.7603
경남 직업트라우마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경남 근로자건강센터 내)	055.713.2401
경북북부 직업트라우마센터	경북 구미시 여헌로 30, 4층	054.716.0009
경산 직업트라우마센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경산 근로자건강센터 내)	053.853.8579
광주 직업트라우마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내)	062.955.6497
대구 직업트라우마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 근로자건강센터 내)	070.8827.4853
대전 직업트라우마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대전 근로자건강센터 내)	042.936.9573
부산 직업트라우마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부산 근로자건강센터 내)	051.329.7304
부천 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 근로자건강센터 내)	032.329.9565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 직업트라우마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서울 근로자건강센터 내)	02.838.6497
서울서부 직업트라우마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 내)	02.2093.2650
울산 직업트라우마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내)	052.201.9963
인천 직업트라우마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4층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내)	032.818.3660
전남동부 직업트라우마센터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3층 (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 내)	061.692.9640
전남서부 직업트라우마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2층 (전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 내)	061.463.2901
전북 직업트라우마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전북 근로자건강센터 내)	063.211.9988
제주 직업트라우마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 근로자건강센터 내)	064.752.8986
충남 직업트라우마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충남 근로자건강센터 내)	041.566.8993
충북 직업트라우마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5층 (충북 근로자건강센터 내)	043.218.9415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축지원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 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실행 결과를 자체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재해예방과 기업 손실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를 말합니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기준 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체제이며,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요

※ 안전보건공단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은 매년 사후/연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이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반 활동을 말합니다.

KOSHA-MS 인증 적용 범위(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단, 기존 인증을 받은 적용범위 제외 대상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사후심사: 인증 유효기간 내 예정대로 실시
- 신규인증 및 연장 심사: 접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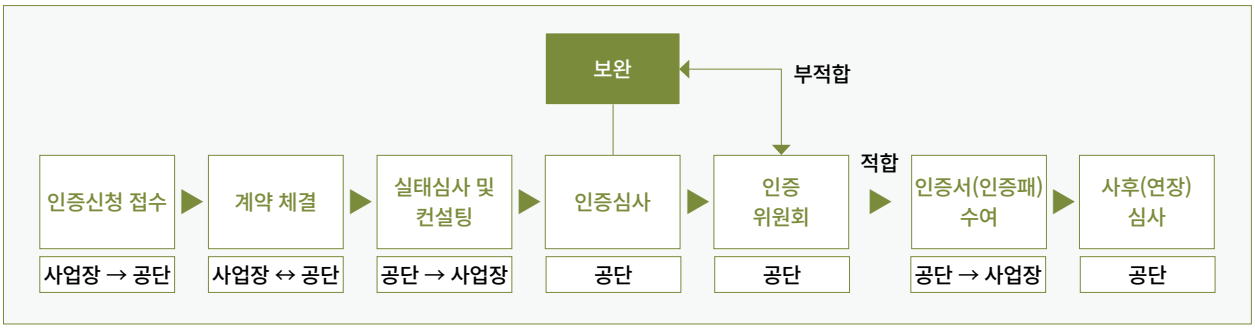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규칙 제1127호, '25.04.10.) 참조

인증심사 항목

- 안전보건경영체제 분야(26개 항목)
- 안전보건활동 분야(15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6개 항목) 등

47개 항목의 판단기준에 의해 심사 실시

KOSHA-MS 인증 절차



실태심사 안전보건경영 관련 서류 확인 및 준비상태 확인
인증심사 안전보건경영 이행상태 등 인증 적합여부 현장 확인
사후심사 인증 후 매년 1회 이상 인증기준 지속여부 현장 확인
연장심사 인증 후 3년마다 인증기준 지속여부 현장 확인

인증효과

- 인증사업장 재해감소 효과 입증(인증사업장 재해분석 결과 제조업 평균재해율의 50% 수준 유지)
- 효율적인 안전·보건활동으로 작업환경 및 근로복지 개선
- 각종 법규 및 규제에 대응하여 벌금 및 과태료 절감
-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으로 공생협력 강화
- 주기적 예방점검을 통한 장비, 설비의 가동율 향상으로 생산성 증대
- 사고손실 위험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 제고(기업인수 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
- 안전보건방침에 적합한지를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입증
- 기업 이미지 개선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

지원정책(혜택)

- 실태심사 비용 면제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 P등급 사업장
  - 공동인증기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 심사 비용 면제
  -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신규 인증 시 실태·인증·사후 심사 비용(첫 번째 연장심사 전까지 한함)
  - 발주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심사비용 전부 면제
- 심사비용 1/2 감면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인증·사후 심사 비용(첫 번째 연장심사 전까지 한함)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수제의 일환으로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 시 가점 부여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 제조기업 대출실행 시 보증비율 100%적용(최초 3년간) 및 보증료율 0.2p% 감면

※ 본 서식 및 사업장 현황 조사표 양식은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사업신청·조회 → 기타사업 조회 → 제조업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안내 하단 '인증신청서와 자체평가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신청서

사업장명(영문) ①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②	[ ]
대표자(영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소재지(영문) ⑤		근로자 수 ⑥	
전화번호 ⑦		업종 및 업태 ⑧	
담당자(직책) ⑨	[ ]	휴대폰 (이메일) ⑩	[ ]
인증적용 범위 ⑪	☐ 사업장 전체	☐ 사업장 일부(	)
공동인증 희망 ⑫	☐ ISO 45001 공동인증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장 귀하

첨부 서류	
서류명	**비고**
1. 사업장 현황 조사표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별지 1-1.1서식
2. 안전보건경영 조직도 1부	사업장 자체자료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별지 16호 서식

사업장 현황 조사표

• 일반현황

사업장명		위험성평가기법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 명(교대작업: [ ] 없음, [ ] 있음) • 비정규 근로자 : 명, • 협력업체: 개사(명)		
모기업 협력업체 여부	[ ] 모기업 명칭: [ ] 사내 협력업체 수: 개소 [ ]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수: 명		
다른 인증 여부	[ ] ISO 9001 [ ] ISO 14001 [ ] OHSAS 18001 [ ] ISO 45001 [ ] 기타( )		
컨설팅 여부	[ ] 없음 [ ] 있음 (컨설팅 기관 :)		
안전관리현황	[ ] 안전관리자(성명) : [ ] 보건관리자(성명) :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성명) : [ ] 안전대행기관: [ ] 보건대행기관:		
최근 3년간 재해현황 (자체조사)	년	년	년
	재해자 수(사망자 수)	재해자 수(사망자 수)	재해자 수(사망자 수)
	명	명	명
산재원인과 대책			
업무담당자	• 부서명: • 직책: • 성명: • TEL : • 휴대폰: • E-mail : • FAX: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성(사업장 보유자료 대체 제출가능)

공정명	주 작업 내용	유해 및 위험 설비(중요 대상)	잠재위험성(협착·충돌·전도·감전 등)

* 공정이 복잡한 경우는 주요 공정에 한하여 간략히 작성토록 하며 필요 시 별지 사용 가능

13

건강일터 조성지원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감소를 위한 환기장치, 폭염 및 온열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 금액

품목구분	기업 규모	지원한도	지원비율
환기장치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 사업장당 최대 5천만원 - 조리 부산물은 최대 2500만원	공단 판단 금액의 70%
온열질환 예방장비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 소기업 규모 사업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 중기업 규모 협력업체	- 동일 사업주당 2천만원	

지원대상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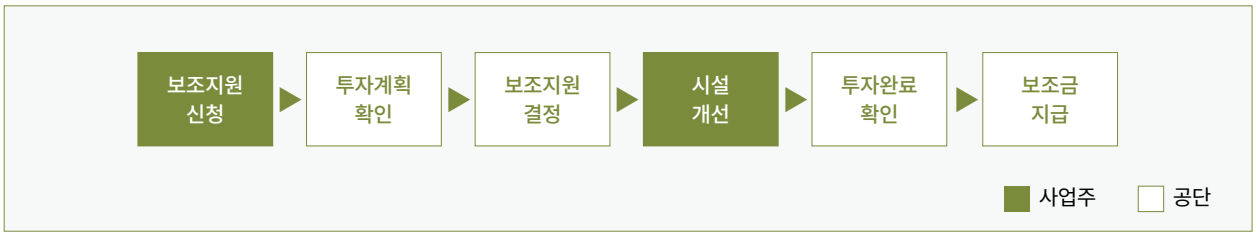
환기장치

지원 품목	품목 조건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 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 불가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배기환기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설비전체를 신규·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강제급기 및 강제배기 방식에 한하여 지원 가능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 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온열질환 예방장비

품목명	지원기준
이동식 에어컨	- 옥외작업 현황을 확인하여 각 1~3대 내외로 지원 - 산업용 선풍기 단독 신청 불가
산업용 선풍기	
제빙기	- 현장 규모,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 판단, 지원
그늘막	- 건설업본사에 지원 -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 지원

지원 절차



신청 방법

환기장치

공단 광역·지역본부, 지사 방문신청 또는 우편으로 서류제출 가능

※ 신청 서식 및 제출서류는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유형별/재정지원 → 건강일터 조성지원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장비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접속 →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유형별/재정지원 선택 후 검색 → 건강일터 조성지원(온열질환 예방장비) → 공지사항

문의처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대표번호 1644-8845

PART

6

재해예방 유관기관 현황

01 안전보건공단 **117**

02 고용노동부 **118**

03 근로복지공단 **119**



01 안전보건공단

기관명	기관별 주소	대표전화	팩스
안전보건공단 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성안동)	1644.4544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성안동)	1644.4544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성안동)	1644.5656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성안동)	1644.4544	-
서울광역본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9층	02.6711.2800	02.6711.2820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04	033.243.8315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8층	02.6924.8700	02.6924.8729
서울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135, 4층	02.2086.8000	02.2086.8019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033.820.2580	033.820.2591
부산광역본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051.520.0520	051.520.0519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정동로 83, 2,4층	052.226.0510	052.260.6997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	055.269.0510	055.269.0590
경남동부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055.371.7500	055.372.6916
광주광역본부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8,9,11층	062.949.8700	062.949.8708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4층	063.240.8500	063.240.8519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B/D 7층	061.288.8700	061.288.8778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064.797.7500	064.797.7518
전북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 116, 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3층	063.460.3600	063.460.3650
전남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00	061.689.4990
대구광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21층	053.609.0500	053.421.8622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054.478.8000	054.453.0108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053.650.6810	053.650.6820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054.271.2013	054.271.2020
인천광역본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032.510.0500	032.574.6176
경기광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3,14층	031.259.7149	031.259.7199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41.4900	031.878.1541
고양파주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8층	031.995.6581	031.995.6585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00	032.680.6552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천혜제일빌딩 2층	031.481.7599	031.414.3165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 소곡회관 2층	031.785.3300	031.785.3381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평택시 칠괴길 87, 2,3층	031.690.1900	031.690.1991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042.620.5600	042.633.1938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KT 3층	043.230.7111	043.236.0371
충북북부지사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	043.849.1000	043.857.0755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00	041.579.8906

0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연번	기관명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본부	세종 법원로 82	044.202.8800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02.2231.0009
2	서울강남지청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02.584.0009
3	서울동부지청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02.403.0009
4	서울서부지청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빌딩 3,5,6층	02.713.0009
5	서울남부지청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02.2639.2100
6	서울북부지청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02.950.9880
7	서울관악지청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2	02.3281.0009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2~6층	032.460.4545
9	인천북부지청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	032.540.7910
10	부천지청	경기 부천시 석천로 207	032.714.8700
11	의정부지청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	031.877.0009
12	고양지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6층	031.931.2800
13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031.259.0204
14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031.788.1505
15	안양지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031.463.7300
16	안산지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031.412.1992
17	평택지청	경기 평택시 고덕중앙5길 72	031.646.1114
18	강원지청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033.269.3551
19	강릉지청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91	033.650.2500
20	원주지청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	033.769.0800
21	태백지청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033.550.8609
22	영월출장소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033.374.0009

연번	기관명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051.853.0009
24	부산동부지청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051.559.6688
25	부산북부지청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덕포동)	051.309.1500
26	창원지청	경남 창원시 성삼구 창이대로 532번길 28	055.239.6500
27	울산지청	울산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옥동)	052.272.0009
28	양산지청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석산리)	055.370.0997
29	진주지청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11번길 43	055.752.0009
30	통영지청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055.650.1951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범어동 734)	053.667.6200
32	대구서부지청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3층	053.605.9000
33	포항지청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 (대잠동)	054.271.6700
34	구미지청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임수동 92-31)	054.440.3300
35	영주지청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054.639.1111
36	안동지청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00
3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062.975.6200
38	전주지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1가) 고용노동부종합청사	063.240.3400
39	익산지청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어양동 626-1)	063.839.0009
40	군산지청	전북 군산시 조촌5길 44(조촌동 852-1)	063.452.0009
41	목포지청	전남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061.280.0100
42	여수지청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웅천동)	061.650.0108
4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둔산동)	042.480.6290
44	청주지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043.299.1114
45	천안지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	041.560.2800
46	충주지청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3-3	043.840.4000
47	보령지청	충남 보령시 옥마로 42	041.930.6138
48	서산지청	충남 서산시 쌍연남1로 37, 3층	041.661.5630

03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지역	기관명	관할구역
서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서울강남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송파구·광진구·강동구
	서울서부지사	서울특별시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서울관악지사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서울서초지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성동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
	부산동부지사	부산광역시 금정구·동래구·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부산북부지사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중부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연제구
대구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수성구·달성군
	대구북부지사	대구광역시 북구·서구·군위군,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
인천	경인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옹진군
	인천북부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광주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
	광산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나주시·장성군·영광군·함평군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춘천지사	강원도 춘천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경기도 가평군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양양군·고성군
	태백지사	강원도 태백시·삼척시
	영월지사	강원도 영월군·평창군·정선군
대전충청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중구·서구·대덕구
	대전동부지사	대전광역시 동구,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북도 옥천군·영동군
	세종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
울산	울산남부지사	울산광역시 동구·남구
	울산중부지사	울산광역시 중구·북구, 울주군

지역	기관명	관할구역
경남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창녕군·함안군·의령군
	양산지사	경상남도 양산시·밀양시
	김해지사	경상남도 김해시
	진주지사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합천군·거창군·산청군·하동군·함양군·남해군
	통영지사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북	포항지사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
	구미지사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348~525-8 (구미국가산업단지 지역에 한함)
	경산지사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청도군
	영주지사	경상북도 영주시·상주시·문경시·봉화군
	안동지사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
경기	수원지사	경기도 수원시
	화성지사	경기도 화성시
	용인지사	경기도 용인시·여주시·이천시
	평택지사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부천지사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안산지사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고양지사	경기도 고양시
	파주지사	경기도 파주시
	성남지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양평군
	의정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남양주지사	경기도 남양주시·구리시
충북	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증평군·보은군
	충주지사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
충남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보령지사	충청남도 보령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
	서산지사	충청남도 서산시·당진시·예산군·태안군
전북	전주지사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무주군
	익산지사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
	군산지사	전라북도 군산시·부안군·고창군
전남	목포지사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장흥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진도군·신안군
	여수지사	전라남도 여수시·광양시
	순천지사	전라남도 순천시·고흥군·보성군
제주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및 요양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교육총괄실-173

안전을 구독하다

온라인 맞춤형 콘텐츠 정기구독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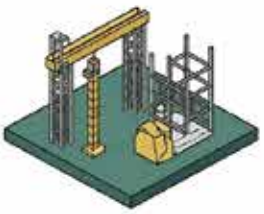


안전보건 자료, 찾지마세요!
구독하면 **알아서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서비스란?

안전보건공단의 다양한 콘텐츠를 매월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 서비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외국인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 접속 ▸ 산재예방 정보 ▸ 안전보건 자료실 ▸ 구독·신청 서비스
▸ **온라인 맞춤형 콘텐츠 정기구독**

받아보고 싶은 업종 선택 후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끝!

QR코드 스캔하고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OPEN 공공누리

안전보건 콘텐츠 200% 활용하기

다양한 형태와 업종별·분야별 자료

포스터·표지(스티커) | OPS | 교재·교안 | 동영상·VR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기타 | 조선업 | 안전 | 보건 | 공통 | 외국인



콘텐츠 이용방법

STEP 1. 산업안전포털 접속
https://portal.kosha.or.kr

STEP 2. 안전보건 자료실 콘텐츠 검색
산업안전포털 ▸ 산재예방정보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

STEP 3. 다운로드 후 교육에 활용!

원하는 자료를 실물로 받아보고 싶다면?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2026-교육총괄실-174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란?



내가 원하는 안전보건 자료를 실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현장에서 받는 안전보건 자료 배송 서비스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상자 당 택배비 착불 3,000원 만 내면 안전보건 자료가 내 손에!

단, 도서산간 지역은 택배사 운영정책에 따라 택배비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안전포털 로그인*
(portal.kosha.or.kr)

미디어 현장배송 접속

장바구니 담기 및 신청하기

택배 수령

로그인 방법

*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 산재보험에 가입된 주문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로 주문 가능!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신청 방법

1



산업안전포털 접속 및 오른쪽 상단 로그인
(https://portal.kosha.or.kr)

* 로그인 안내
산업안전포털 → 고객센터 → 포털이용안내(로그인)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QR ▶

2



미디어 현장배송 퀵메뉴 버튼 클릭

* 경로
산업안전포털 → 산재예방 정보 → 안전보건 자료실 → 구독·신청 서비스 → 미디어 현장배송

3



필요한 콘텐츠를 검색 후 장바구니 담기

4



장바구니에서 신청수량 조정 및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5



약관동의 및 주문자·수령자 정보* 입력 후 주문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로 조회 가능

택배비 착불



OPEN 공공누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활용 가이드



언어 제약 없이
모국어로 안전보건정보 습득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작업 안전수칙, 중대재해 사례 알림 등



동영상, 교재, 교안, OPS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OPS · 스티커





포스터





교재 · 교안







동영상 · VR





2026-교육총괄실-175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자료 이렇게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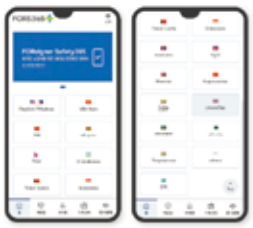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 전용 앱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FORS365 검색 및 다운로드

외국인 노동자
전용 자료실 (앱)
FORS365

Android IOS

② 언어 선택
* 고용허가 송출국가 17개 언어 선택 가능



③ 선택한 국가의 자료만 빠르게!



산업안전 포털

①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접속
portal.kosha.or.kr



② 안전보건자료실 클릭



③ 외국인 자료 선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26-산업안전실-227

제조업 등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⑨**

사다리 사용 작업·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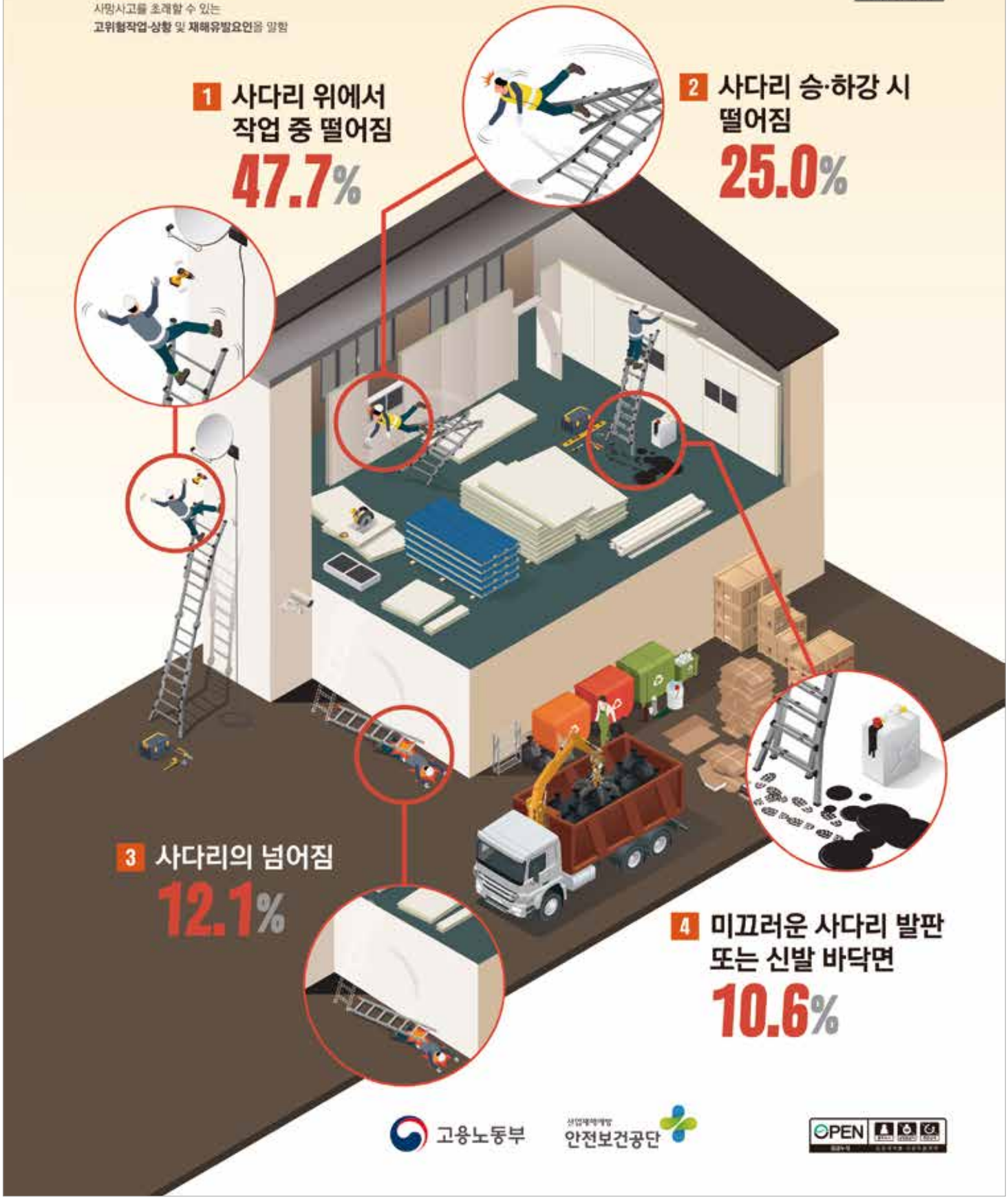
실제 사망사고 확인은 여기서

SIF Serious Injury & Fatality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1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47.7%

2 사다리 승·하강 시 떨어짐
25.0%



3 사다리의 넘어짐
12.1%

4 미끄러운 사다리 발판 또는 신발 바닥면
10.6%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OPEN

제조업 등 사망사고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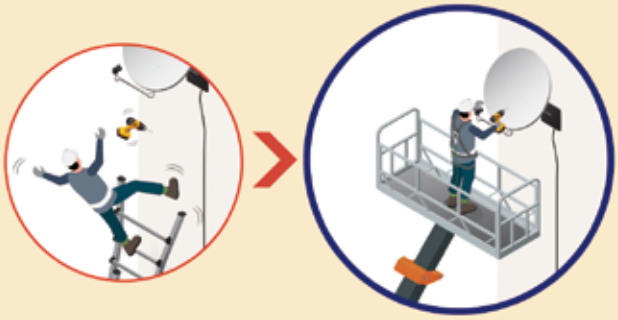
SIF 고위험요인 ⑨

사다리 사용 작업·통행

고위험요인별 안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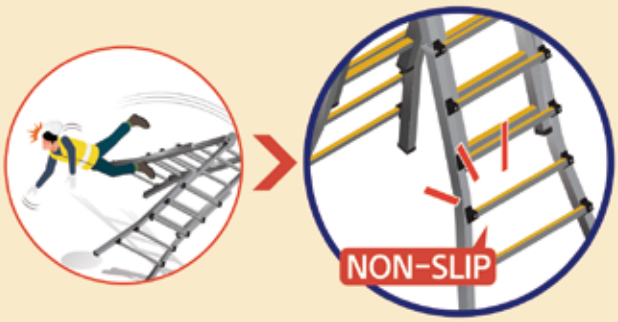
1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대 설치** 후 작업
-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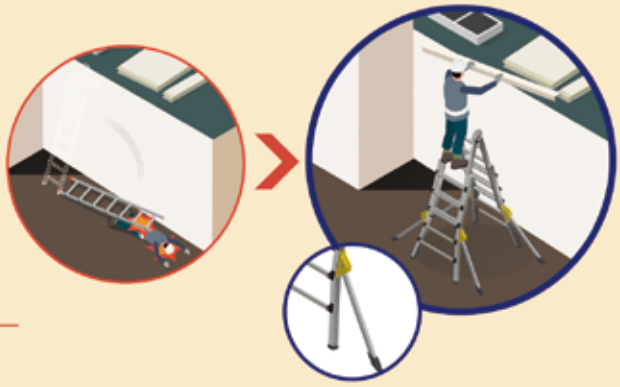
2 사다리 승·하강 시 떨어짐

- 사다리식 통로 등의 **설치기준* 준수**
  *견고한 구조, 손상없는 재료 사용, 발판간격 일정, 벽과의 간격 15cm 이상, 폭 30cm 이상, 사다리 전도·미끄럼 방지, 내민길이 60cm 이상, 기울기 75° 이하 등(안전보건규칙 제24조)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3 사다리의 넘어짐

- 사다리는 **평탄한 곳에 거치**하고 상부는 **견고한 곳에 거치**
- 아웃트리거 설치 등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4 미끄러운 사다리 발판 또는 신발 바닥면

- 사다리 발판 또는 바닥면의 **오일, 물 등을 제거**
- 사다리 발판에 **미끄럼 방지테이프 부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26-산업안전실-226

제조업 등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11**

상하차 작업 또는 화물이 적재된 장소 주변에서의 작업

실제 사망사고 확인은 여기서

SIF Serious Injury & Fatality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1 전도되기 쉬운 물체, 적재상태가 불량한 물체 주변 작업
52.1%

2 적재된 제품이나 화물 적재함 위에 올라서서 작업
27.9%

3 운전석 이탈시 화물자동차 움직임 방지조치 미실시
2.2%

4 화물을 지지하던 물체의 파손
2.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OPEN

제조업 등 사망사고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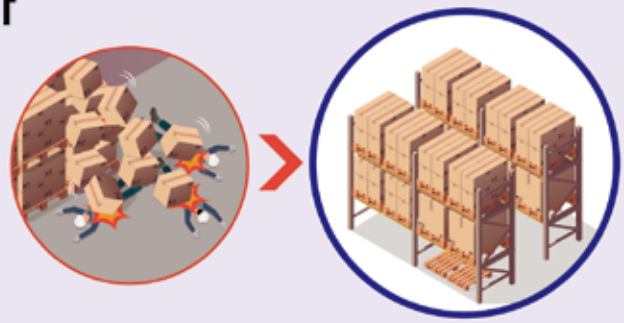
SIF 고위험요인 ⑪

상하차 작업 또는 화물이 적재된 장소 주변에서의 작업

고위험요인별 안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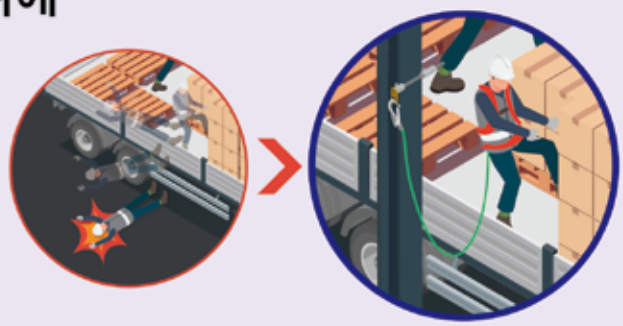
1 전도되기 쉬운 물체, 적재상태가 불량한 물체 주변 작업

- 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적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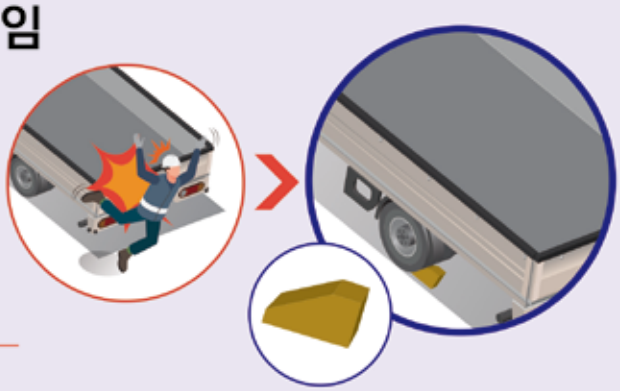
2 적재된 제품이나 화물 적재함 위에 올라서서 작업

- 차량 상부작업 시 작업 장소 상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 작업 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



3 운전석 이탈시 화물자동차 움직임 방지조치 미실시

- 브레이크를 걸고 **고임목** 등을 **설치**하여 불시이동 방지
- 시동정지 및 **시동키 분리·보관**



4 화물을 지지하던 물체의 파손

- 화물 지지물(팔렛트, 고임목 등) **파손 여부 점검**
- 지지물 파손 시 **화물을 안전하게 지지**후 교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26-산업안전실-213

제조업 등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22**

작업장소 통행·이동

실제 사망사고 확인은 여기서

SIF Serious Injury & Fatality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2 설비를 밟고 이동 **13.7%**

4 차량작업 구역에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8.2%**



1 미끄러운 바닥면(오일, 빙판 등), 바닥의 요철부 **15.4%**

3 근로자와 작업차량의 이동동선 미구분 **12.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OPEN

제조업 등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22

작업장소 통행·이동

고위험요인별 안전대책

1 미끄러운 바닥면(오일, 빙판 등), 바닥의 요철부

- 바닥면의 오일, 물 등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조치** 실시
- 설비 오일 미스트 발생부에 **가림판 또는 집진기** 설치



2 설비를 밟고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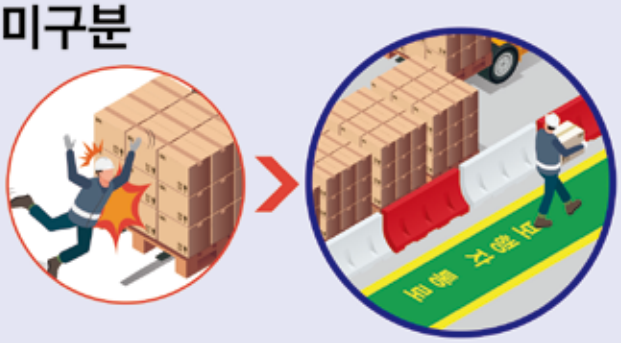
- 추락위험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상시 이동 구간에 **전용의 이동통로** 설치



3 근로자와 작업차량의 이동동선 미구분

- 차량 운행 구역과 근로자 **이동 동선 구분**
- 화물트럭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추락·낙하·협착·붕괴 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4 차량작업구역에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기계 유도, 근로자 출입통제
- 화물트럭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추락·낙하·협착·붕괴 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26-산업안전실-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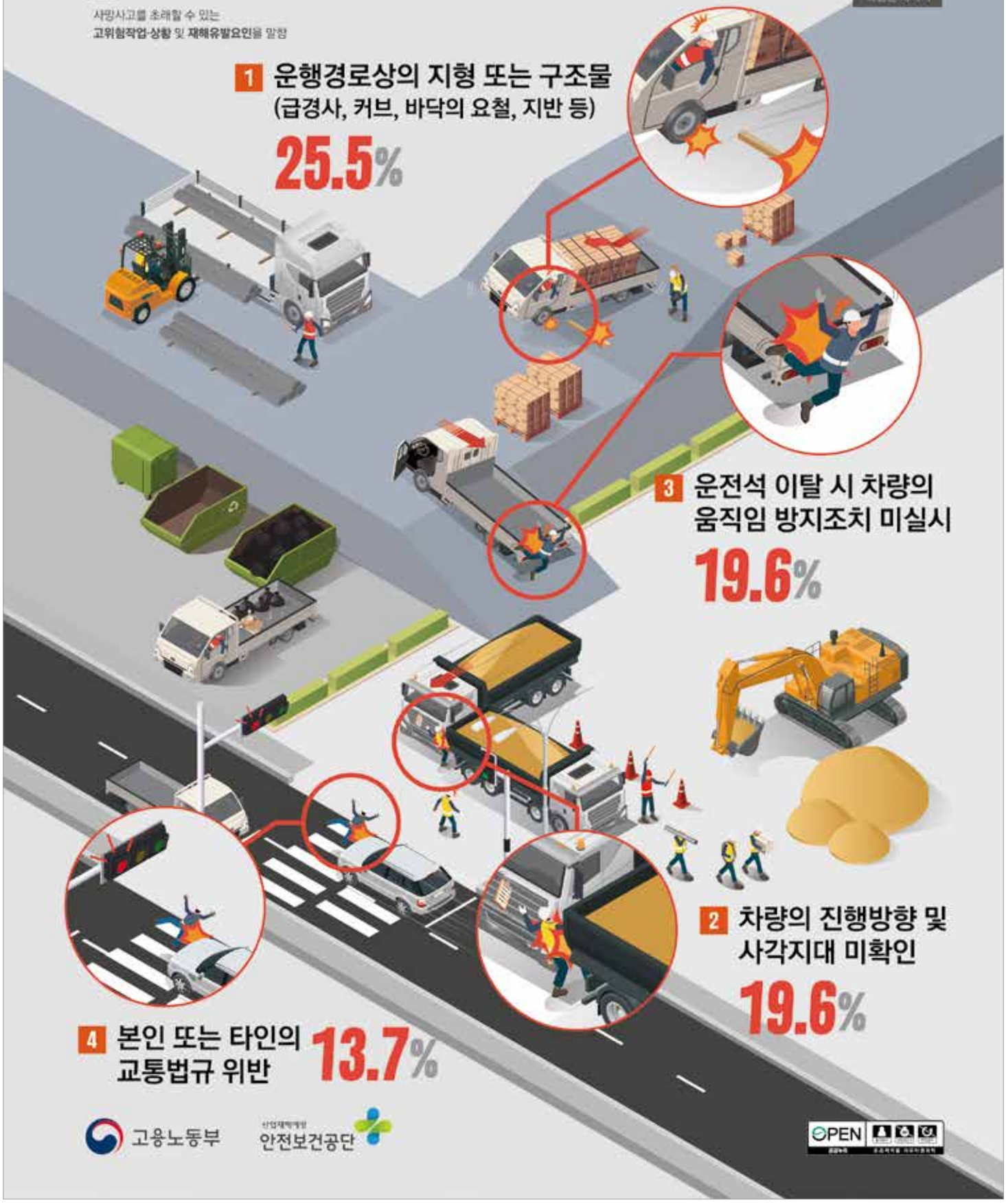
제조업 등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30**

차량 운전 등 작업

실제 사망사고 확인은 여기서

SIF Serious Injury & Fatality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1 운행경로상의 지형 또는 구조물 (급경사, 커브, 바닥의 요철, 지반 등) **25.5%**

3 운전석 이탈 시 차량의 움직임 방지조치 미실시 **19.6%**

2 차량의 진행방향 및 사각지대 미확인 **19.6%**

4 본인 또는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 **13.7%**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OPEN

제조업 등 사망사고 유발

SIF 고위험요인 30

차량 운전 등 작업

고위험요인별 안전대책

1 운행경로상의 지형 또는 구조물 (급경사, 커브, 바닥의 요철, 지반 등)

- 도로 **평탄화** 및 **제한속도** 준수
-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



2 차량의 진행방향 및 사각지대 미확인

- 차량 운행 시 **주변 위험요인 확인** 철저
- 차량 후진 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 출입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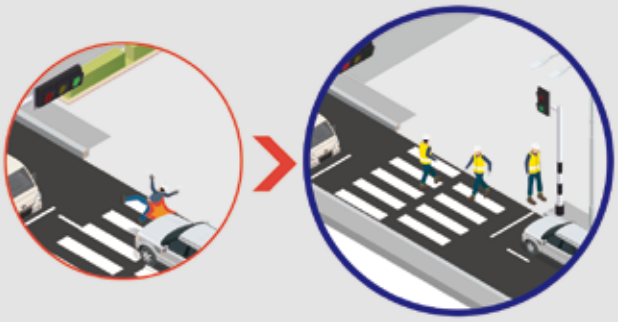
3 운전석 이탈 시 차량의 움직임 방지조치 미실시

- 브레이크를 걸고 **고임목 등을 설치**하여 불시이동 방지
- 시동정지 및 시동키 **분리·보관**



4 본인 또는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

- 안전교육 및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26 - 교육총괄실 - 394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일터에서 알아야 할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 교육 기본서

서비스업

발행일 2026년 6월[개정 15판]

발행인 김현중

발행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성안동)

이 교재는 안전보건공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편집하거나 이를 활용한 2차 저작물 제작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안전관리 업무의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업무상 이의 제기나 소명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전보건 교육 기본서는 일터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보건정보** 및
공단의 **주요 사업안내**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26 안전보건 교육 기본서
온라인 설문조사 바로가기